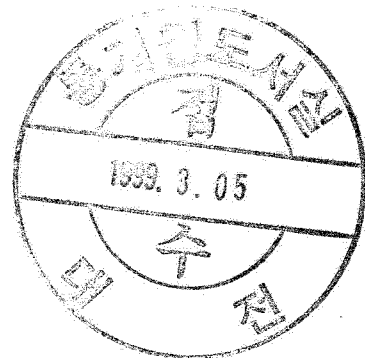


소 비 자 물 가 조 사

1989.



경 제 기 획 원

목 차

I. 물가통계의 의의	3
1. 물가통계의 의의	3
2. 물가통계의 필요성	5
3. 물가통계의 현황.....	7
II.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의 개요	11
1. 지수의 성격 및 조사목적	11
2. 조사연혁	11
3. 기준년도	12
4. 가중치	12
5. 품목선정 및 분류	14
6. 가격자료	18
7. 지수산식 및 계산방법	20
8. 공 표	22
《 소비자물가 조사체계도 》	23
III. 물가조사시 일반적 유의사항	24
1. 품질규격 및 단위	24
2. 조사지역 및 대상처	25
3. 조사시점 및 빈도.....	27
4. 조사방법	28
5. 조사요령	28

6. 품질품목 처리	29
IV. 조사표류 기입요령	31
1. 소비자물가 조사표	31
2. 영화관람료 조사표.....	32
3. 납입금 조사표.....	32
4. 집세 (방세) 조사표	33
V. 조사표류 발송방법	38
1. 조사표 발송	38
2. 질의·조회 응신.....	38
VI. 명부작성	39
1. 물가조사기록부	39
2. 대상처 명부.....	39

부 록

I. 소비자물가 조사대상품목 및 품질규격	43
II. 조사상 유의품목의 참고사항	72
III. 소비자물가 각종 조사표류	87

I. 물가통계의 의의

1. 물가통계의 의의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가격에 의한 시장자동조절원리에 있기 때문에 일국경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물가라고 할 수 있다.

해방후 인플레이션의 진행과정에서 물가가 급속히 상승하거나 변동의 진폭이 큰 상황하에서 건전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공통적으로 물가안정에 부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물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물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물가정책을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교환경제하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서 표시되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구매력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폐의 구매력이라 함은 화폐 한 단위로 얻을 수 있는 재화와 서어비스의 수량을 의미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일차적으로는 단일가격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종합함으로써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 이와같이 특정의 개개상품가치를 화폐단위로서 표시한 것을 그 상품의 가격이라 하고 국민경제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것을 물가 혹은 물가수준이라고 한다. 즉 개개상품의 가격을 평균치로 나타낸 것을 흔히 가격과 구분하여 물가라고 하고, 이러한 물가에 대한 자료를 총칭하여 물가통계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거시적

인 성격을 지닌 물가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국내시장의 형태여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같이 가격과 물가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을 갖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자들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다. 오히려 개개상품의 가격쪽에 일상생활이 근접되어 있어 물가가 내린 경우에는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개의 상품과 서어비스의 가격에 대해서 전월 혹은 전년에 구입할 때에 비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가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면서 생활하지만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것들을 종합한 전체적인 가격인 물가변동은 그렇게 간단히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물가통계는 일반적으로 지수의 형태로 변형하여 이용하게 된다.

종합적인 물가변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수치로 나타내 고자 고안한 것이 물가지수(price index)이다. 물가지수는 어느 시점의 가격을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물가를 백분비로 표시한 것으로 물가의 종합적인 변동사항을 재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이 아닌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알기 쉬운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더위나 추위를 온도계로 재는 것과 같이 물가지수는 물가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재는 척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가의 움직임을 말할 때 우리들은 많은 상품의 가격이나 서어비스의 요금을 생각하게 되겠지만 상품의 값은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 판매하는 생산자판매가격, 도매업자가 판매하는 도매가격, 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소매가격등으로 구분된다. 상품이 제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여러가지 유통과정을 거치게 되며 각 유통단계별 유통마진 때문에 상이한 가격이 형성된다. 따라서 물가수준도 각 단계마다 별도로 변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물가통계의 필요성

물가통계는 일반적으로 지수형태로 이용하는데 이러한 물가지수는 그 작성목적에 따라 일반목적지수와 특수목적지수로 나눌 수 있다.

일반목적 지수는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변동과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로서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지수인 도매물가지수 (Wholesale price index) 를 의미하며, 특수목적지수는 특정범위의 재화와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코자 하는 지수로서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수출입물가지수 (Export and Import price index),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등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지수들을 왜 작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도매물가지수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화폐구매력 측정의 기준지표로 이용됨은 물론 경기변동지표와 각종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즉 통화금융정책의 수립은 물론 정부기관, 경제연구기관, 민간기업등의 시장분석, 장기구매 및 판매계약,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설확장 혹은 시설대체 계획에서의 비용산정, 자산재평가등에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도매물가는 수급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서 수급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용된다. 소비자물가의 대상은 최종소비재, 서비스이기 때문에 임금등의 가중치가 높고 경기에 그다지 민감하게 움직이는 일은 없다. 그러나 도매물가는 기업간의 중간재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정도가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명목소득에서 실질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데 소비자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명목적인 소득의 가치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이 된다.

또한 생계비로서의 가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의 재화 및 서비스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돈이 더 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로 측정되게 된다.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1.8% 상승으로 되었다는 것은 1년전과 똑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1년전보다 1.8% 더 많은 댓가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소득의 실질감소」라고 불리운다.

즉 소비자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명목적인 소득의 가치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농촌판매 및 구매지수는 농가의 구매력수준과 농공산품간의 균형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인 농가패리티지수와 농산물가격 안정등을 위한 농업정책수립과 농산물계통출하를 위한 기초자료 및 농가의 실질소득측정등의 디스플레이터로 사용된다.

한편 수출입상품에 대한 가격변동을 파악하는 수출입물가지수는 해외요인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정과 수출입가격의 상호비교를 통해 교역조건을 판단하는 지수로 사용되며 우리경제의 경우처럼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특히 중요성을 갖는다.

3. 물가통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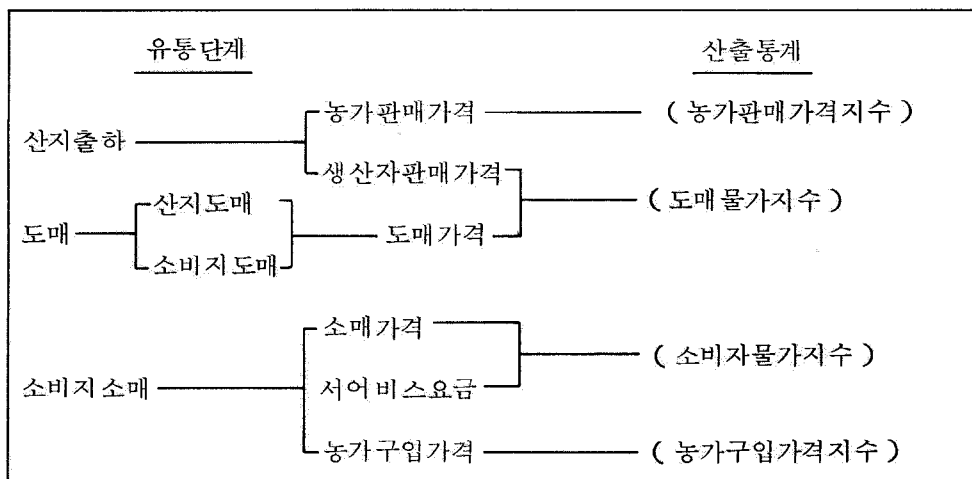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품목에 따라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유통단계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으나 대체적으로 <표1>과 같이 4 단계로 보았을 때 이에따라 산출되는 물가통계는 <표2>에서와 같이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구입가격지수,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주요물가통계의 종류와 작성체계등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1> 유통 단계

산 지		소 비 자	
산지출하 (1 단계)	산지도매 (2 단계)	소비지도매 (3 단계)	소비지소매 (4 단계)

<표2> 유통단계별 산출물가통계



<표 3>

주요물가지수의 종류 및 작성 방법 비교

	① 소비자물가지수	② 도매물가지수	③ 농촌물가지수		④ 수출입물가지수		⑤ 중소기업생산자판매가격지수
			구입가격지수	판매가격지수	수입물가지수	수출물가지수	
1. 작성기관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국은행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2. 작성목적	도시가계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및 서비스가격의 변동 측정	국내제 1 차거래 (도매) 단계의 모든 상품가격의 변동 측정	농가에서 구입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측정 농가교역조건을 측정하는 패리티지수 작성	농가에서 생산·판매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측정 농가교역조건을 측정하는 패리티지수 작성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상품의 가격변동 측정	수출상품의 가격변동 측정 수입가격과의 상호 비교에 의한 교역조건판단지수 작성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가격동향을 측정
3. 기준년도	1985년	1985년	1985년	1985년	1985년	1985년	1985년
4. 가중치 기준	1985년 도시가계조사 소비자출액 비중	1985년 광공업통계조사 및 농수산물통계 등의 국내거래 비중	1985년 농가경제조사 지출액 비중	1985년 농가경제조사 수입액 비중	1985년 무역통계의 수입액 비중	1985년 무역통계의 수출액 비중	1985년 광공업통계 조사의 생산액 비중 (1988.1월부터 신지수로)
5. 품목선정 기준 및 품목 수	지출구성비 1/10,000 이상되는 품목 411개 품목	국내거래구성비 1/10,000 이상되는 품목 867개 품목	지출구성비 1/1,000 이상되는 품목 246개 품목	수입구성비가 1/1,000 이상되는 품목 62개 품목	수입구성비 1/2,000 이상되는 품목 178개 품목	수출구성비 1/2,000 이상되는 품목 233개 품목	중소기업제품중 생산액 비중이 큰 277개 품목
6. 조사지역	11 대도시의 42개 시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청주, 수원, 마산)	16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청주, 수원, 마산, 제주, 목포, 강릉, 울산, 포함)	85개 군지역의 농촌 5일시장 (전국 139개 표본군)	좌 동	품목별 2개 이상의 수입업체	품목별 2개 이상의 수출업체	품목별 4개씩 868개 중속제조업체
7. 조사시점	월 3회 (5일, 15일, 25일)	월 3회 (5일, 15일, 25일)	월 2회 (15일 기준 5일시장의 전장일과 후 장일)	좌 동	월 1회 (20일)	월 1회 (20일)	월 3회 (5일, 15일, 25일)
8. 지수산식	라스파이레스산식	라스파이레스산식	라스파이레스산식	라스파이레스산식	라스파이레스산식	라스파이레스산식	라스파이레스산식
$\text{※ 라스파이레스산식} = \frac{\sum \frac{\text{품목의 현재가격}}{\text{품목의 기준년도가격}}}{100} \times 100$							

Ⅱ.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의 개요

1. 지수의 성격 및 조사목적

- 가.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수로서
- 나. 농가, 여가, 단독가구(독신자가구) 및 가계수지파악이 곤란한 가구등을 제외한 도시가구의(가구원수: 4.18인, 소비지출액: 331,683원) 평균적 물가 변동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임.

2. 조사연혁

기준년도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대상품목수
1936년	서울소매물가지수	경기상공회의소	10여 품목
1947년	서울소매물가지수	조선은행	43개 품목
1955년	서울소비자물가지수	조선은행	154개 품목
1960년	서울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	279개 품목
1965년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	경제기획원	285개 품목
1970년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	경제기획원	338개 품목
1975년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	경제기획원	349개 품목
1980년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	경제기획원	394개 품목
1985년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	경제기획원	411개 품목

3. 기준년도

가. 1955년 이래 5년단위로 기준시 개편

(UN권고안에서도 지수노후화 방지 및 물가수준비교의 용이등을 이
유로 5~10년 단위의 기준시 개편을 권고하고 있음)

나.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가격비교 및 가중기준시는 1985년

4. 가중치

가. 가중치 모집단

1) 1985년 도시가계조사 연평균 소비지출액(구조)를 기초로 가중치
모집단 구성

[가중치 모집단 산출 내역]

1980년 기준	1985년 기준	비 고
소비 지출액 (220,923 원)	소비 지출액 (323,313 원)	
	+전세평가액 (27,455 원)	'80년 : 소비 지출에 포함 '85년 : 별도 집계
자 가 평 가 액 (27,134 원)		"
증 여 금 (1,477 원)		"
손 해 보 험 료 (20 원)	(-손해보험료 (64 원))	
	경 조 비 (5,650 원)	'80년 : 기타잡비에 포함
	종교관계비 (3,129 원)	"
	회 비 (10,242 원)	"
가중치모집단 (192,292 원)	가중치모집단 (331,683 원)	

[각국의 가중치 산출자료]

자 료	채용국가	비 고
가 계 소 비 지 출 액	127 개국	한국, 미국, 영국, 일본등
국 민 소 득 총 계	5 개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소 매 판 매 액	2 개국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국민소득총계+소매판매액	3 개국	동독, 스웨덴 등

도시가계조사

도시가계조사는 법률에 의해 지정된 조사(지정통계 제 10 호)로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도시가계의 수입·지출실태와 생활수준의 변동 파악등을 위해 전국 62 개시에서 농가·어가·외국인가구 등을 제외한 전 가구중 5,150 여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 매월의 기계부기입을 의뢰하여 조사하고 있음.

나. 도시별 품목별 가중치

- 1) 각도시의 가중치모집단에 대한 품목별 지출액 비중
- 2) 1985 년 도시별 가중치 모집단에 대한 품목별 지출액을 1,000 분 비로 산정

$$\frac{\text{도시별 품목별 지출액}}{\text{도시별 가중치 모집단}} \times 1,000$$

[전도시 품목별 가중치]

	가 중 치			증 감 ('85 ~ '80)
	'75년	'80년	'85년	
총 지 수	1,000.0	1,000.0	1,000.0	0
식 료 품 비	542.0	411.3	379.9	△ 31.4
식료품 이외	458.0	588.7	620.1	31.4

다. 도시간 품목별 가중치

- 1) 전도시에 대한 각도시별 소비지출액 비중
- 2) 1985년도 전도시 품목별 소비지출액에 대한 각도시 품목별 소비지출총액을 1,000 분비로 산정

[도시간 품목별 가중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청주	수원	마산	전도시
총지수	544.7	144.3	83.2	67.4	40.4	36.0	17.6	7.6	14.3	26.0	18.0	1,000.0
일반미	474.4	178.2	100.9	69.4	35.6	49.5	23.9	8.4	17.6	22.9	19.2	1,000.0

5. 품목선정 및 분류

가. 품목선정

- 1) 1985년 도시가계의 품목별 소비지출액이 총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월평균 31 원)되는 품목을 원칙으로

2) 동종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고

3) 시장에서 지속적인 가격조사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

[도시별 조사대상 품목 현황]

	전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청주	수원	마산
총 품 목	411	411	411	409	410	408	410	407	405	406	408	408
식료품비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주 거 비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수도·광열	9	9	9	9	9	8	9	9	8	8	9	9
가구집기· 가사용품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57
피복·신발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보건 의료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교육· 교양 오락	59	59	59	59	59	59	59	58	58	58	58	58
교통·통신	16	16	16	14	15	14	15	13	12	13	14	14
기 타 잡 비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나. 품목분류

1) 물가동향의 분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품목별 특성,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

2) 기본분류 : 9대분류지수 (도시가계조사체계항목과 일치시킴)

[9대 기본분류 내역 및 품목수]

대 분 류	중 분 기	소 분 기	품 목
총 지 수	42	18	411
식 료 품 비	11	9	153
식 료 품 이 외	31	9	258
1) 식료품비	11	9	153
2) 주 거 비	2	2	17
3) 광열·수도	3	0	9
4) 가구집기·가사용품	6	0	57
5) 피복·신발	7	0	45
6) 보건의료	3	0	26
7) 교육·교양오락	3	5	59
8) 교통·통신	2	0	16
9) 기타잡비	5	2	29

3) 특수분류지수 ; 5대분류, 성질별 분류, 기본생활품지수등

[5 대 분류 내역 및 품목수]

대 분 류	유 별	품 목 수
총 지 수	37	411
식 료 품 비	14	153
식 료 품 이 외	23	258
1) 식 료 품 비	14	153
2) 주 거 비	6	70
3) 광 열 비	3	9
4) 피 복 비	5	59
5) 잡 비	9	120

[성질별 분류 내역 및 품목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품 목 수
총 지 수	6	7	411
상 품	2	7	323
서 어 비 스	4	0	88

[기본 생활품 지수 품목 (20개품목)]

쌀, 콩, 밀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우유, 배추, 파, 고추, 소금, 설탕, 라면, 전기료, 수도료, 연탄, 프로판가스, 런닝셔츠, 학생운동화, 시내버스료

6. 가격자료

가. 품질규격 및 조사단위

1) 품질규격

가) 품질규격 선정

- 품목별로 시장거래량(소비량)등을 고려하여 대중성 있는 품종 품질규격 및 상표등을 상세하게 규정
- 단일품질규격으로 동일상품의 가격을 대표할 수 없을 때에는 복수 품질규격을 지정

나) 품질규격 대체

- 생산기술의 발달, 소비자 기호의 변화등에 따라 조사품질규격으로서의 타당성을 상실하였을 때는 품질규격 대체
- 대체 방법 : 직접대체법, 접속법, 생산비접근법 등

2) 조사단위

시장에서 상거래 관습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입하는 거래단위를 조사단위로 지정

나.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처

1) 조사지역

가) 서울 등 11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청주, 수원, 마산)

2) 조사대상처

가) 조사시장

도시별로 규모가 큰 대표적인 3~10개 소매시장 선정

나) 조사대상처

- 일반품목 : 조사시장내에서 품목별로 소비자 출입이 가장 많은
약 3,000개 소매점포 및 서어비스업체
- 집 세 : 도시가계 및 경제활동 조사구내 3,000여 임대가구
- 학교납입금 : 90개 각급학교

다. 조사시점 및 빈도

- 1) 월 3회(5일, 15일, 25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 2) 다음 품목은 가격변동시기와 빈도를 고려하여 월별 및 분기별로 조사
 - 가) 집세 및 영화관람료 : 월 1회(5일)
 - 나) 학교납입금 : 분기 1회(분기초 5일)

라. 조사방법

- 1) 조사원에 의한 직접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 2) 서면조사(학교납입금)와 전화조사(담배, 신문구독료) 병행

마. 조사가격

- 1) 소매상 및 서어비스업체의 정상적인 현금판매가격

2)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가격

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일시적인 비정상가격

나) 염가판매가격

다) 다량거래 및 다른 상품과 끼워파는 가격

라) 외상이나 할부판매가격

3) 선어개, 채소, 과일 등 계절식품이 그 계절성으로 인하여 시장 출
회기 극소한 기간에는 정상 출회될 때까지 최종 조사된 정상가격
으로 보합처리

7. 지수산식 및 계산방법

가. 지수산식

1) 기준시 고정가중산술식인 라스파이레스 수정산식 (MODIFIED LASPE -
YRES' FORMULA)에 의거, 지수산출

2) 도시별 지수

$$\frac{\sum \frac{P_t}{P_o} W_c}{\sum W_c}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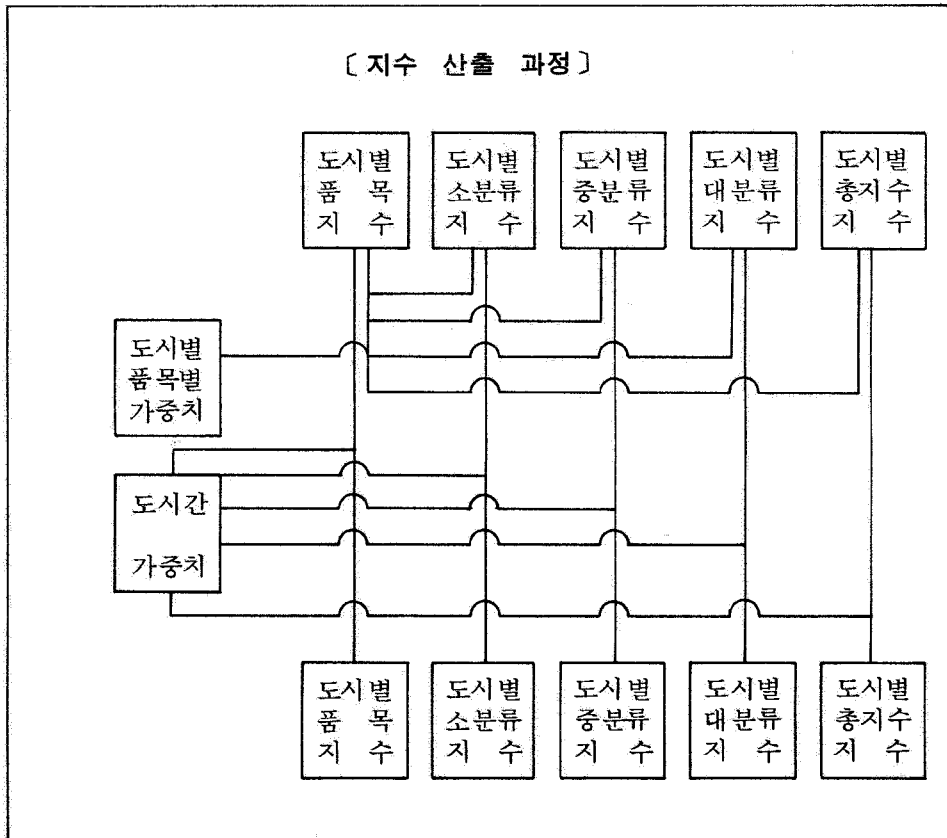
3) 전도시 지수

$$\frac{\sum \left[\frac{\sum \frac{P_t}{P_o} W_e}{\sum W_e} \right] W_a}{\sum W_a} \times 100$$

[P _o : 도시별	품목별	기준시가격
	P _t : 도시별	품목별	비교시가격
	W _c : 도시별	품목별	가중치
	W _e : 도시간	품목별	가중치
	W _a : 전도시	품목별	가중치
]			

나. 지수계산방법

- 1) 품목별지수 ; 월별, 도시별로 산출
- 2) 각도시별 총지수,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지수 ; 품목별 지수를 라 이파이레스식에 의거 가중평균
- 3) 전도시 총지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품목별지수 ; 도시별, 계열별로 도시간 가중치 적용
- 4) 연평균지수 ; 월별지수를 단순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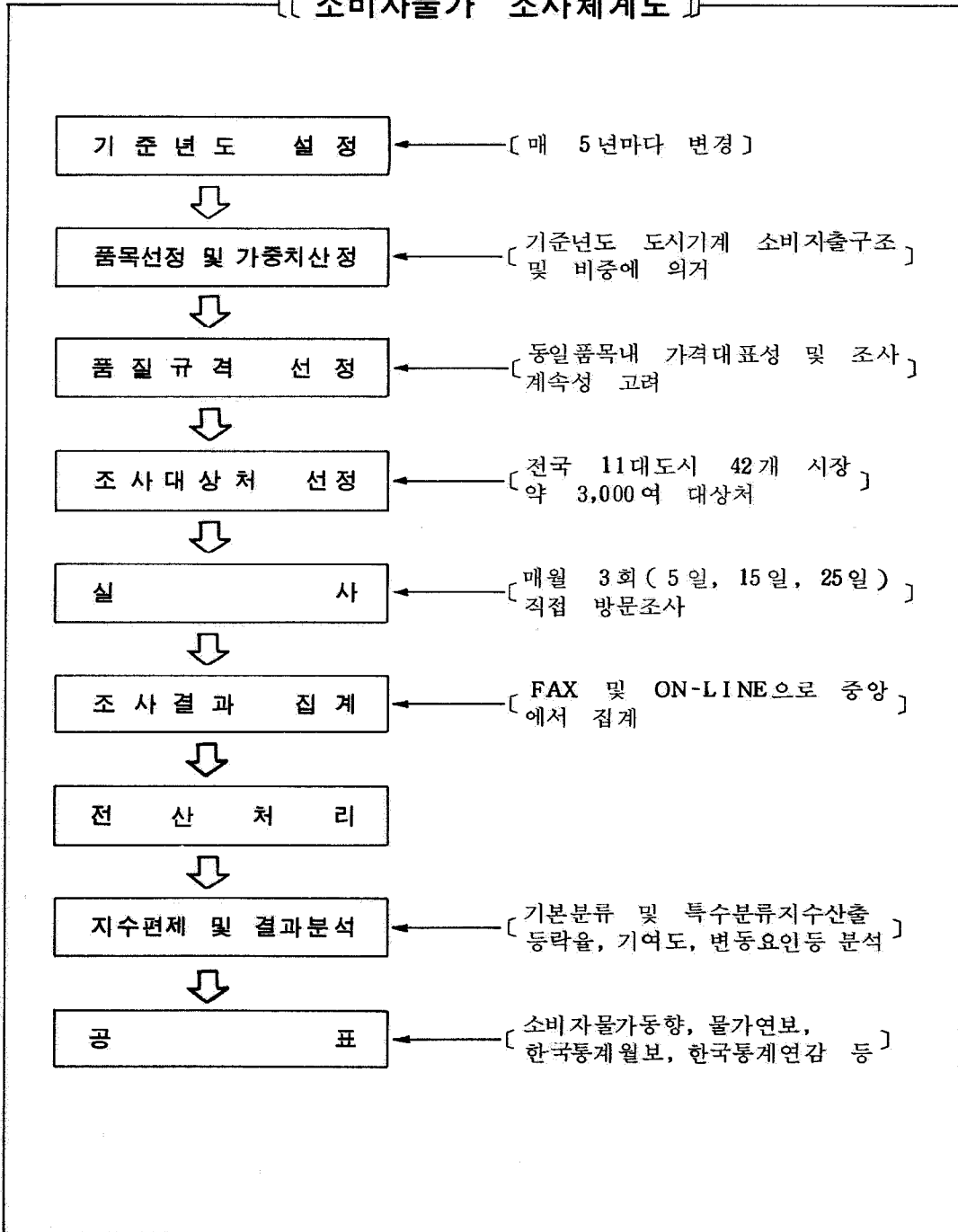
[각국의 지수산식 사용예]

산 식	채 용 국 가	비 고
LASPEYRES 산식	131 개국	한국, 일본, 미국 등
PASSACHE 산식	1 개국	루마니아
연 쇠 방 식	3 개국	영국, 소련, 동독

8. 공 표

- 가. 소비자물가동향 매익월 초순
- 나. 한국통계월보 매익월 중순
- 다. 물 가 년 보 매익년 상반기
- 라. 한국통계년보 매익년

〔 소비자물가 조사체계도 〕



Ⅲ. 물가조사시 일반적 유의사항

1. 품질규격 및 단위

가. 품질규격

- 1) 가격계열의 동일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품목별 조사가
격의 결정적 요소인 품질규격을 확정시켜 계속적으로 동일한 품질
규격에 의한 가격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상품의 질, 크기, 무게, 모양, 생산지, 상표등에 따라 그 상품의 가
격이 다양하므로 단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규
격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규격
 - 나)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규격
 - 다) 생산량이 많은 규격
 - 라) 시장출회(출회)가 많은 규격
 - 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규격
 - 바) 조사 지역별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량출회
소비되는 규격으로 상표를 지정한다.

나. 품질규격 변동

이미 선정된 품질규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품질
규격 변동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하고 신·구 품질규격의 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표의 가격기재는 구가격을 기재하고 중앙업무지시(승인)에 의하

여 신 가격만을 조사할 수 있다.

- 1)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 2) 생산양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

비닐봉지 제품이 종이포장으로 된 경우

- 3) 출회가가 적어 가격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 4) 소비자 수요가 극소한 경우

다. 단 위

소비자의 구매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래단위를 책정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통일하였으나 거래단위가 상이한 지역은 규정된 단위로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예)

- 1) 500g으로 책정된 쇠고기 1근을 375g으로 판매하는 지역에서는 500g으로 환산한 가격을 조사 기입한다.
- 2) 콩치의 단위가 10마리인데 6마리에 2,400원으로 거래된다면 환산하여 4,000원으로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2. 조사지역 및 대상처

가. 조사지역

서울을 비롯한 11개 주요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춘천, 청주, 수원, 마산)

나. 대상처

조사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상처 선정기준

- 1) 소비자의 출입이 가장 많은 소매점포로서 가격의 대표성이 높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점포
- 2) 타 조사시장과 중복된 점포는 제외하여야 한다.
- 3) 하나의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조사구역내에서 대표적 점포를 선정한다.
- 4) 다음과 같은 점포는 조사대상처가 될 수 없다.
 - 가) 도매점포
 - 나) 도산매 점포로서 도매를 주로 하는 점포
 - 다) 통신 판매점
 - 라) 중고품 판매점
 - 마) 영업상태가 불량한 점포
 - 바) 중앙에서 지정하지 않은 백화점, 수퍼마켓, 연쇄점 등

라. 보조대상처

보조대상처는 지정된 대상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격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상점포의 특별한 사유로 이상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에 참고 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대상처 외에 몇개의 보조대상처를 정하여 활용한다.

- 1)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이 일시 품절일 때
- 2)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이 달라졌을 때
- 3) 지정된 대상처의 일시 휴업

마. 대상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신 대상처 선정과 동시에 대상처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송부하고 중앙업무지시(승인)에 의하여 대상처를 변경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처가 폐업하는 경우
- 2) 조사대상처가 전업하는 경우
- 3) 조사품목을 취급하지 않게 된 경우
- 4) 조사대상처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 5) 조사대상처가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신규대상처의 선정은 대상처의 선정기준에 의함은 물론 통계사무소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조사시점 및 빈도

가. 조사시점

조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조사일 전일에 조사하고 조사일이 명절(추석, 성탄절 등)인 경우에는 2일전에 조사하되 앞당긴 조사일이 휴무일, 공휴일이면 다시 1일전에 조사한다.

(예)

- 1) 5일이 휴일이면 4일에 조사하고, 4일이 명절이면 2일에 조사한다.
- 2) 25일이 명절이면 23일에 조사하고, 23일이 휴일이면 22일에 조사한다.

나. 조사빈도

1) 순기별 조사

(매월 5, 15, 25일) : (영화관람료, 납입금, 집세를 제외한 400개 품목)

2) 월별조사

(매월 5일) : 영화관람료(2개 품목), 집세(2개 품목)

3) 분기별 조사

(매분기 말월 5일) : 납입금(7개 품목)

4. 조사방법

조사대상처에 직접방문, 타계식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요령

소비자 물가조사는 면접조사이므로 무엇보다도 응답자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담당자는 응답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조사한 가격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납득 시킴으로써 응답자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격을 알려 주도록 한다.

가. 일정한 응답자를 상대로 가격을 조사한다.

나. 각 언론 매체등을 통하여 사전에 물가동향에 관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항상 조사구내의 시장동향에 밝아야 한다.

라. 품질규격을 숙지함은 물론 유사품종에 대하여도 많은 지식을 갖도록 노력한다.

6. 품질품목 처리

다음의 경우에만 품질로 처리한다.

가. 계절적으로 완전히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나. 생산이 중단되어 재고량이 품질되고, 신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그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품질 처리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처에서 일시 품질일 때는 조사구내의 타점포(보조대상처)에서 조사하여 등락이 있을 때는 본 대상처의 전순가격에 등락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예)

갈치값이 전기에 1,000 원이었고 금기에 품질인 경우 보조대상처에서 조사하여 동일규격이 1,300 원이고 이 점포의 가격이 전기와 변동이 없다면 같은 1,000 원으로 기입한다.

그러나 전기의 1,000 원에서 1,300 원이 되었다면 같은 추세로 보아 1,300 원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본규격과 (60 cm) 다른 규격의 갈치 (80 cm)만 출회하고 있을 때 전기 기본규격이 1,000 원이고 80 cm의 가격이 1,300 원이었는데 금기 80 cm 가격도 1,300 원이라면 금기조사 가격은 1,000 원이다. 그러나 금기 80 cm 가격이 1,500 원이라면 등귀 비율이 같다고 보아 $(1,000 \text{ 원} \times \frac{1,500}{1,300} = 1,154)$ 1,154 원이 금기 가격이다.

Ⅳ. 조사표류 기입요령

1. 소비자물가 조사표

- 가. 조사가 끝나면 조사표에 의하여 기록부에 반드시 이기하고 비교란은 품질규격 변동 및 등락사유를 기입한다.
- 나. 환산가격을 기입할 때는 “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그 내용을 비교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단, 금액이 100 원 미만일 때에는 소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입한다.
- 다. 조사표의 숫자는 숫자란의 $\frac{1}{2}$ 정도 크기로 아랫부분에 기입하고 정정할 때는 지우지 말고 두줄로 횡선을 긋고 날인한다.

(예)

1	2	4	○	○	○
1	0	5	○	○	○

- 라. 전국적으로 단일가격이 형성되는 전기료, 담배 등 중앙조사품목(등락사유란에 ☆표시된 품목)은 유통통계과에서 직접 조사하므로 조사표에 가격을 기재하지 않는다.
- 마. 해당도에서 조사하지 않는 품목은 반드시 사선을 긋는다.
- 바. 조사표가 작성되었으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재검토하여야 한다.
- 사. 맨 후면의 물가동향란에는 시황과 물가동향 및 기타 참고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2. 영화관람료 조사표

- 가. 극장명을 기입하고 개봉, 재개봉별로 해당란에 명기한다.
- 나. 품질규격에 맞는 영화명만을 기입하며 대작이나 흑백영화, 쇼는 제외한다.
- 다. 방화와 외화를 명확히 구별하여 금액을 기입하고, 특히 합작영화는 방화로 간주하여 기입한다.
- 라. 동일극장내에서 방화와 외화를 동시상영할 경우, 별개로 간주하여 각각의 금액을 모두 기입한다(동일금액).
- 마. 상영일자 중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
- 바.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영화요금(입장세 및 문예진흥기금포함) 이외에 각종 구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포함되었으면 제외시킨다.
- 사. 1매의 조사표에 연기하여 기입한다.

3. 납입금 조사표

- 가.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월별로 징수를 하지만 분기별 조사이므로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록한다.
- 다. 중·고등학교의 납입금은 반드시 2학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라. 대학교 납입금은 자율적 경비의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시점마다 그 내역의 추가 또는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학년을 계열별(인문사회, 이학, 공학, 예능, 체육, 의치학, 약학)로 조사하고 그 계

열을 명시한다.

단, 의치학계열은 예과 1.2학년 본과 1,2,3,4학년을 조사한다.

마. 전문대학은 기계과, 간호학과 1년생을 기준으로 하되 1기분의 입학
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4. 집세(방세) 조사표

가. 조사요령

- 1) 도시가계조사 대상가구중(전주, 춘천, 청주, 수원, 마산은 경제활동
인구 조사 대상가구) 전세나 월세로 들어 있는 모든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농가, 어가의 임대가구와 비거주용 건물내의 임
대가구, 외국인 가구 및 점포가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 2) 주택종류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구분하며, 방 1개,
방 2개, 방 3개 이상(독채포함)을 규격별로 조사한다.
- 3) 보증금, 매월지불액, 월세평가액의 전월가격은 착오가 없도록 대조 확
인하여 기록한다.
- 4) 전월과 금월의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등락사유(새로 전입, 수리,
시설확충 등)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5) 월세 평가액은 보증금 없이 단순한 월세로 임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보증부 월세일 경우에만 기입하되 보증금과
매월 지불액에 변동이 없으면 월세평가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예컨대 보증금 1,000,000원에 매월 50,000원씩 지불하는 보
증부 월세로 임대한 방이 있을 경우, 계약당시 그 지역의 보증금

1,000,000 원에 대한 평가액이 20,000 원이라면 보증금란에 1,000,000 원 매월 지불액란에 50,000 원, 월세평가액란에 70,000 원을 각각 기록하고 보증금과 매월지불액에 변동이 없으면 월세평가액 70,000 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 삭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매월지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록한다.
- 7) 전출후 공가는 전월금액만 기입하며 공가로 있다가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는 전입이 아닌 신규로 처리한다.
- 8) 기존가구에서 단순히 금액만 변동된 경우에는 가구현황은 사선으로 처리한다.
- 9) 독채세입자가 제 3자에게 방 1개를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하는 경우는 처음세입자만 대상가구로 한다.
- 10) 방이 합쳐지는 경우, 즉 A가구와 B가구중 B가구가 전출가고 A가구가 B가구방을 모두 쓰는 경우에는 B가구와 A가구를 폐지로 처리하고 새로운 가구번호를 부여한 후 신규로 잡으며 규격은 방 1개에서 방 2개로 처리한다.

나. 집세 (방세) 조사표 기입요령

1) 난외사항

가) 조사시점 : 매월 25일

나) 지역번호 :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대전 06 광주

07 전주 08 춘천 09 청주 10 수원 11 마산

다) 조사구번호 : 조사구번호는 5 단위로 기입한다 (예, 10263)

라) 조사대상가구 : 도시가계조사대상가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및 경제활동대상가구 (전주, 춘천, 청주, 수원, 마산)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 있는 모든 임대가구 (농가, 어가, 외국인가구 및 비거주용가구 제외)를 조사한다.

2) 난내사항

가) 가구번호 : 가구번호는 도시가계조사가구 및 경제활동대상가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구번호 (8단위)를 기입한다.

나) 주택종류 : 주택의 외관상 형태로 구분하여 해당번호란에 ○으로 표시한다.

※ 단독주택인 경우 (예, ①. 단독주택 2. 아파트, 연립)

다) 규 격 : 규격은 방의 수에 따라 해당번호란에 ○으로 표시한다.

○ 방 1개인 경우 (예, ①. 방1개 2. 방2개 3. 방3개)

※ 단, 독채인 경우 방 3개에 포함한다.

라) 집세종류 : 집세는 전세, 월세로 구분하며 해당번호란에 ○으로 표시한다. (월세에는 보증부월세, 삭월세, 단순월세가 포함된다)

※ 월세인 경우 (예, 1. 전세 ② 월세)

마) 가구현황 : 집 (방)세 대상의 변동이나 대상 가구내 세입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해당 번호란에 ○으로 표시한다.

① 신규 : 도시가계조사가구 및 경제활동대상가구에서 새로 임대를 놓거나 공가 (빈방)으로 있다가 임대를 하는 경우로 금월금액만 기입한다.

② 폐지 : 집주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임대를 원치 않거나 도시가계

조사대상가구나 경제활동대상지역이 교체된 경우로 전월금액만 기입한다.

- ③ 전입 : 집(방)의 대상은 변동이 없으나 세를든 가구의 변동으로 새로 전입한 가구를 말한다.

이때, 집(방)세 금액은 전월금액과 금월금액을 동시에 기입하며 전월금액은 전입가격에 해당된다.

주의사항 : 집(방)세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세의 종류가 달리 이루어진 경우(전세↔월세)에는 「5변동」가구로 처리된다.

- ④ 전출 : 세든 가구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로 전월금액만 기입한다.

- ⑤ 변동 : 기존세입자의 집세종류(전세↔월세)가 변하는 경우, 또는 전출과 전입이 이루어지면서 집세종류(전세↔월세)가 변동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비교난에 「전입가구변동」이라고 기입한다.[※ 해당 변동전의 전월금액과 변동후 금월금액을 각각 기입한다].

- ⑥ 기타 : 전출과 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전출후 공가]나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으로 표시한다.

바) 금 액

－ 공통사항

- 단위가 '천원'이므로 기입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 금액란중 해당이 없는 란에는 사선(\)을 긋는다.

- ① 전세는 보증금만 기입한다.

② 월세중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매월 지불액, 월세평가액을 모두 기입한다. 이때, 월세평가액은 보증금없이 단순한 월세로 임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③ 삭월세는 보증금란에 조사시점(25일)을 기준하여 공제되고 남은 나머지 보증금만 기입하고, 매월 지불액란에는 월별 공제액을 기입한다.

④ 단순월세는 매월 지불액만을 기입한다.

사) 비 고 : 비고란에는 등락사유 및 「5변동」에 대해 전입과 동시에 변동에 대한 전입표시, 「6기타」에 해당되는 사항(전출후 공가)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V. 조사표류 발송방법

1. 조사표 발송

조사담당자는 조사시점 현재로 가격조사가 끝나면 통계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즉시 조사표를 중앙에 우송하여야 한다. 가격보고는 신속을 요하므로 조사담당자의 일신상 사유로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유고시에는 통계사무소장은 즉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2. 질의조회 응신

- 가. 전화에 의한 질의나 질의조회 응신서를 접수하면 즉시 내용에 따라 재조사나 응신서를 답신한다.
- 나. 질의조회에 대한 응신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다. 질의조회나 지시사항은 질의조회 기록부에 반드시 기록한다.

Ⅵ. 명 부 작 성

1. 물가조사 기록부

조사담당자는 우선적으로 물가조사 기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이를 휴대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및 대상처 또는 지정상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중앙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즉시 물가조사 기록부를 정정 기입하여 조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사용년도가 끝난 것은 중앙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대상처 명부

서식에 의거 명부를 작성하되 품목수의 합계가 당해 조사구의 조사품목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대상처 명부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중앙에 송부하고 1부는 사무실에 비치한다.

부 록

I.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및 품질규격

II. 조사상 유의품목의 참고 사항

III. 소비자물가 각종 조사표류

- ☆ 집세 (방세) 조사표
- ☆ 집세조사 변동집계표
- ☆ 집세 (방세) 조사대상가구 변동보고서
- ☆ 집세 (방세) 조사대상가구 명부
- ☆ 영화관람료 조사표
- ☆ 국민학교 납입금 조사표
- ☆ 중·고등학교 납입금 조사표
- ☆ 대학·전문대학 납입금 조사표
- ☆ 소비자물가 변동보고서
- ☆ 소비자물가 조사대상처 명부
- ☆ 질의조회 기록부

I. 소비자물가 조사대상품목 및 품질규격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총품목수)	(411)		1000.0	
		(식료품)	(153)		379.9	
		(곡물)	(9)		98.7	
1	101101	일 반 미	정미(재래미)	8 kg	79.1	
2	101102	정부방출미	정미(신곡, 상품)	8 kg	13.3	★
3	101103	찰 쌀	정미	8 kg	1.6	
4	101104	보 리 쌀	정부방출 보리쌀	7.65 kg	1.9	
5	101105	콩	백태	7.5 kg	1.8	
6	101106	팥	적두	8.33 kg	0.5	
7	101107	녹 두	흑갈색	8.33 kg	0.3	
8	101108	좁 찰	차조	7.89 kg	0.1	
9	101109	수 수 쌀	차수수	7.83 kg	0.1	
		(곡물가공품)	(5)		9.0	
10	101201	밀 가 루	중력분 1등급, 제분율 77% 3kg들이, 비닐포장(상표지정)	1 포	0.8	
11	101202	두 부	300g정도(공장제품)	1 모	2.9	
12-1	101203	라 면 (1)	삼양 쇠고기라면, 120g들이	1 개	4.2	
12-2		라 면 (2)	농심 신라면, 120g들이	1 개		
13	101204	국 수	공장제품	375 g	0.9	
14	101205	이 유 식	남양아기밀 F(남양유업), 1kg 캔포장	1 통	0.2	
		(육 류)	(6)		48.1	
15	102101	쇠 고 기	정육	500 g	23.0	

(주) ★ 표시는 중앙조사품목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16	102102	돼 지 고 기	정육	500 g	16.3	
17	102103	닭 고 기	육계, 잡아서 털 뽑은 것 (목, 발 및 내장제거)	1 kg	5.4	
18	102104	소 시 지	백설햄 네모난 반찬소시지, 비닐 포장(제일제당 제품) 300 g	1 개	2.2	
19	102105	햄	롯데 살투우만 로스팜 200g들이	1 통	1.0	
20	102106	베 이 کن	제일제당 백설햄 베이컨 180 g 롯데살로우만 180 g (전주,청주)	1 봉	0.2	
		(유 란)	(5)		19.2	
21	103101	달 갈	흰색, 대란(개당 55 g정도)	10 개	7.9	
22	103102	분 유	남양분유 S-100, 450 g캔포장	1 통	1.6	
23	103103	목장우유(배달)	각 지방 우유협동조합제품 200cc들이 종이팩(고정배달)	1 봉	5.4	
24	103104	목장우유(시판)	흰우유, 종이포장 200cc들이	1 봉	4.2	
25	103105	버 터	서울버터 453 g	1 개	0.1	
		(선 어 개)	(11)		21.0	
26	104101	조 기	생선길이 25 cm정도	1 마리	3.1	
27	104102	갈 치	생선몸길이 60 cm정도	1 마리	4.2	
28	104103	명 태	생선길이꼬리포함 전장 45 cm정도 (1 상자 25 마리정도)	1 마리	2.7	
29	104104	고 등 어	생선길이 35 cm정도	1 마리	2.2	
30	104105	꽁 치	생선길이 30 cm정도	10 마리	0.2	
31	104106	가 자 미	생선길이 25 cm정도, 폭 12cm정도	1 마리	0.6	
32	104107	삼 치	길이 35 cm정도	1 마리	1.0	
33	104108	병 어	생선길이 20 cm정도	1 마리	0.2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34	104109	물 오 징 어	생선몸길이 25 cm정도	10 마리	3.9	
35	104110	굴	싱싱한 것	375 g	1.1	
36	104111	조 개	껍질 간 것, 싱싱한 것	375 g	1.8	
		(염 건 어 개)	(8)		11.8	
37	104201	굴 비	길이 25 cm정도, 10 마리	1 두름	0.6	
38	104202	마 른 멸 치	황백색, 길이 5 cm정도, 3 kg	1 포	3.6	
39	104203	마 른 오 징 어	몸길이 20 cm정도	20 마리	1.6	
40	104204	복 어	황태, 길이 40 cm정도	1 마리	1.1	
41	104205	새 우 젓	추젓	375 g	1.3	
42	104206	멸 치 젓	완전히 삭은 것	375 g	1.0	
43	104207	생선통조림(1)	꽂치통조림, 425 kg들이 (상표 지정)	1 통	0.5	
		생선통조림(2)	동원산업 동원참치통조림 190 g 들이 (라이트스탠다드)	1 통	0.5	
44	104208	생 선 목	비닐포장 200 g (상표지정, 삼호표우선)	1 봉	2.1	
		(채 소)	(19)		37.0	
45	105101	무 우	재래종 잎 없는 것, 3 개 정도	3.75 kg	3.6	
46-1	105102	배 추	호배추 (봄 배 추) 5월~6월	3.75 kg	8.7	
46-2		//	(여름배추) 7월~9월	3.75 kg	8.7	
46-3		//	(가을배추) 10월 이후	3.75 kg	8.7	
47	105103	양 배 추	겉껍질 벗긴 것	3.75 kg	0.3	
48	105104	파	개량파, 머리둘레 3 cm정도	3.75 kg	3.5	
49	105105	양 파	망에 든것	1 kg	1.4	
50	105106	시 금 치	신선한 것	375 kg	1.6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51	105107	콩 나 물	몸길이 5cm정도	375 g	3.4	
52	105108	상 치	앞상치	375 g	1.4	
53	105109	당 근	2개 정도	375 g	0.8	
54	105110	오 이	재래종 애오이, 길이 25cm정도	10개	2.4	
55	105111	호 박	애호박 600g정도	1개	0.7	
56	105112	가 지	길이 25cm정도	10개	0.3	
57	105113	도 마 도	2개 정도	375 g	1.4	
58	105114	감 자	흰색 25개 정도	3.75 kg	2.5	
59	105115	고 구 마	15개 정도	3.75 kg	1.0	
60	105116	도 라 지	껍질 벗겨 조낸 것, 싱싱한 것	375 g	0.7	
61	105117	버 섯	송이버섯, 신선한 것	375 g	0.9	
62	105118	고 사 리	신선한 것	375 g	0.8	
63	105119	꽃 고 추	신선한 것	375 g	1.6	
		(해 조)	(3)		7.4	
64	105201	김	개량김, 검정색(김발용중품)	100장	5.9	
65	105202	미 역	단각, 15cm×75cm정도	1장	1.3	
66	105203	다 시 마	말린 것	375 g	0.2	
		(채소가공품)	(2)		2.2	
67	105301	당 면	순녹말	375 g	1.3	
68	105302	단 무 지	왜무우	375 g	0.9	
		(과 일)	(14)		24.0	
69	106101	사과(홍옥)	개당 180g정도	10개	2.0	
70	106102	사과(골덴)	개당 350g정도	10개	1.3	
71	106103	사과(부사)	개당 300g정도	10개	3.7	
72	106104	배	개당 450g정도	10개	1.3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73	106105	복 승 아	백도, 개당 250 g정도	10 개	1.4	
74	106106	포 도	흑갈색	375 g	1.7	
75	106107	감	홍시, 개당 150 g정도	10 개	0.9	
76	106108	꽃 감	꽃이당 10개	1 꽃이	0.1	
77	106109	밤	굵은 것	1 l	1.1	
78	106110	밀 감	제주산, 개당 100 g정도	10개	3.8	
79	106111	참 외	은천참외 (나이론참외), 개당 600 g정도	10개	1.6	
80	106112	수 박	개당 5 kg정도	1개	2.7	
81	106113	딸 기	개량종	375 g	2.1	
82	106114	과실통조림	복숭아통조림 425 g들이 (상표 지정)	1 통	0.3	
		(유 지)	(5)		6.5	
83	107101	참 기 림	공장제품	0.18 l	3.5	
84	107102	콩 기 림	해표 (동방유량) 프라스틱병 900 ml들이	1 병	2.6	
85	107103	들 기 림	공장제품	0.18 l	0.1	
86	107104	마 아 가 린	소머리표 (서울스노우마아가린) 225 g들이	1 개	0.2	
87	107105	옥수수기름	제일제당 (백설표) 프라스틱 용 기 1,800 ml들이	1 병	0.1	
		(조 미 료)	(18)		27.2	
88	107201	고 추	재래종, 완전히 말린 것 (화건, 중품꼭지 제거)	600 g	10.8	
89	107202	고 추 가 루	중가루	100 g	1.9	
90-1	107203	마 늘 (1)	마른 것, 직경 4 cm정도	1 접	5.5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90-2	107203	마 늘 (2)	간마늘 중품	1 kg	5.5	
91	107204	천 일 염	국산 1등염	2 l	0.7	
92-1	107205	재 제 염 (1)	국산, 고운 소금	2 l	0.5	
92-2		재 제 염 (2)	미원 맛소금 250 g들이	1 봉	0.5	
93	107206	참 깨	흰색	1 l	1.5	
94	107207	설 탕	백설탕(제일제당), 정백당 비닐포장 500 g들이	1 봉	1.6	
95-1	107208	화학조미료(1)	미원 발효조미료, 비닐포장 500 g들이	1 봉	1.3	
95-2		화학조미료(2)	백설탕 해산바이오 2.5, 500 g 들이	1 봉	1.3	
96	107209	혼합조미료	제일제당, 백설탕 쇠고기 다시다 100 g들이	1 봉	0.3	
97	107210	간 장	샘표(진간장), 플라스틱병 1,000 ml들이	1 병	1.0	
98	107211	고 추 장	비닐포장 200 g (상표지정)	1 봉	0.3	
99	107212	된 장	비닐포장 500 g (상표지정)	1 봉	0.2	
100	107213	마 요 네 즈	오뚜기표 450 g들이	1 병	0.4	
101	107214	캐 참	오뚜기표 400 g들이	1 병	0.3	
102	107215	카 레	오뚜기식품 100 g, 분말	1 봉	0.1	
103	107216	생 강	10개 정도	375 g	0.5	
104	107217	식 초	화영식초, 유리병 160 ml들이	1 병	0.2	
105	107218	후 촛 가 루	캔포장 100 g들이 (상표지정)	1 봉	0.1	
		(빵 및 과자)	(15)			
106	108101	빵	크림빵, 비닐포장 (상표지정)	1 개	22.0	
107	108102	식 빵	새옥수수식빵, 비닐포장 (상표지정)	1 개	5.9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108	108103	케 이 크	제과점판매, 데코레이손케익의 3호 1,300g정도	1개	0.5	
109	108104	초코파이	오리온제과 초코파이 45g	1개	1.2	
110	108105	카스테라	카스테라 80g 비닐포장(상표 지정)	1개	0.1	
111	108106	도 록 스	롯데스카치캔디 빠다 170g	1봉	0.7	
112	108107	비 스 켓	오리온 다이제스티브비스켓 200g	1봉	1.6	
113	108108	스넥과자	새우깡(농심) 90g들이	1봉	4.7	
114	108109	초코렛	해태 허쉬초코렛 28g	1개	0.3	
115	108110	검	롯데 대형검 20g(7개입)	1갑	0.1	
116	108111	크랙카	롯데 야채크랙카 110g	1봉	0.2	
117	108112	떡	인절미	600g	2.4	
118	108113	땅콩	볶은 것, 속껍질 있는 것	1g	0.6	
119	108114	아이스크림	해태 부라보콘 110cc	1개	1.4	
120	108115	아이스캔디	색빛나바(대일유업) 70cc 비비빅(광주), 해태색동바(청 주), 롯데팔빙고(마산)	1개	1.0	
		(음 료)	(11)		11.0	
121	109101	콜라	코카콜라 355ml들이	1병	1.2	
122	109102	사이다	칠성사이다 340ml들이	1병	1.3	
123	109103	기타혼합음료	환타 355ml들이	1병	0.4	
124	109104	과실넥타	대한종합식품 팽귤표 오렌지 200g들이	1통	1.5	
125	109105	유산균음료	해태클피스 1,000ml들이 종이팩	1봉	3.0	
126	109106	유산균발효유	야쿠르트 65ml들이, 고정배달	1병	0.7	
127	109107	분말커피	동서식품, 인스턴트커피 250g 들이	1병	1.5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128	109108	분말인삼차	일화인삼차 3 g들이 50 포	1 상자	0.1	
129	109109	두 유	정식품, 베지밀 시판 180 ml들이	1 병	0.4	
130	109110	커피 크림	동서식품, 프리마 375 g들이	1 병	0.6	
131	109111	보 리 차	병용기 공장제품, 볶은 것, 비닐포장 1 kg들이	1 봉	0.3	
		(술)	(8)		13.7	
132	110101	맥 주	OB 500 ml들이 병 보증금 포함	1 병	5.0	
133	110102	소 주	진로 25도 360 ml들이	1 병	3.7	
134	110103	청 주	백화수복 특급 1,800 ml들이	1 병	1.3	
135	110104	탁 주	일반소매점포 판매품 플라스틱용기 1 l 들이	1 병	1.3	
136	110105	고 량 주	수성고량주 250 ml	1 병	0.4	
137-1	110106	위 스키 (1)	베리나인골드 360 ml	1 병	0.8	
137-2		위 스키 (2)	OB 패스포트 360 ml	1 병	0.8	
138-1	110107	기타재제주(1)	진로 유니퍼 360 ml	1 병	0.5	
138-2		기타재제주(2)	롯데칠성 캡틴큐 360 ml	1 병	0.5	
139	110108	생 맥 주	주류판매점 OB맥주 500cc	1 잔	0.7	
		(외 식)	(14)		21.2	
140	111101	설 령 탕	대중식당	1 그릇	3.9	
141	111102	냉 면	대중식당	1 그릇	2.6	
142	111103	비빔 밥	대중식당	1 그릇	1.7	
143	111104	갈 비 탕	대중식당	1 그릇	1.7	
144	111105	찌 개 백 반	대중식당, 김치찌개	1 인분	3.3	
145	111106	칼 국 수	분식점, 증류	1 그릇	1.2	
146	111107	짜 장 면	중화요리점	1 그릇	1.6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147	111108	우 동	중화요리점	1 그릇	0.6	
148	111109	잠 빵	중화요리점	1 그릇	1.0	
149	111110	오무라이스	경양식집	1 그릇	0.6	
150	111111	함 박 스텍	경양식집	1 그릇	0.6	
151	111112	다 방 커 피	다방판매 품	1 잔	1.5	
152	111113	다 방 우 유	다방판매 품	1 잔	0.1	
153	111114	다방국산차	다방판매 품, 울무차	1 잔	0.8	
		(식료품이외)	(258)		620.1	
		(주 거 비)	(17)		129.4	
		(지 불 집 세)	(2)		114.8	
154	201101	전 세	적벽돌 목조기와집 또는 철근콘크리트집	※	82.8	★
155	201102	월 세	적벽돌 목조기와집 또는 철근콘크리트집	1 개월	32.0	★
		(주택설비재료)	(10)		10.5	
156	202101	도 배 지	그라비아벽지 3색도 53cm × 1,250cm (상표지정)	1 필	2.6	
157	202102	창 호 지	기계지, 표백 (20 장)	1 권	0.2	
158	202103	비닐장판지	럭키 하이팻트 2mm, 137cm × 485cm	1 장	1.8	
159	202104	종이장판지	황색 4배지, 105cm × 90cm정도	1 장	0.6	
160	202105	시 멘 트	일반용 40kg들이 (상표지정)	1 포	0.9	
161	202106	판 유 리	한국유리공업제품, 투명 두께 3mm (1 평)	918 cm ²	1.0	
162	202107	페 인 트	제비표 (건설화학제품) 흰색, 유 광 외부용 A 급품 4ℓ들이	1 통	1.2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163	202108	합 판	나왕합판 121.2 cm × 242.4 cm 두께 3.2 ~ 3.4 mm (상표지정)	1 장	0.5	
164	202109	벽 들	적벽돌 21 cm × 6 cm × 9 cm	10 장	0.5	
165	202110	기 와	시멘트제품 검정색 30.3 cm × 30.3 cm	10 장	1.2	
		(설비수리) (서비스)	(5)		4.1	
166	202201	전 공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0.4	
167	202202	목 수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1.7	
168	202203	미 장 공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1.0	
169	202204	도 장 공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0.4	
170	202205	잡 부 임	급식제외	1 일	0.6	
		(광열·수도)	(9)		76.1	
		(전기료)	(1)			
171	301101	전 기 료	가정용(기본요금 및 세금포함) 100KWH/월		20.3	★
		(수도료)	(2)		7.2	
172	302101	상 수 도 료	가정용전용 전월간 기본요금 포함 서울, 부산(30 t), 대구, 인천, 대전, 광주(25 t), 그외(20 t)	1 개월	5.0	
173	302102	하 수 도 료	가정용전용 전월간 기본요금포함 서울, 부산(30 t), 대구, 인 천, 대전, 광주(25 t), 그외 (20 t)	1 개월	2.2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연 료)	(6)		48.6	
174	303101	연 탄	소형 22 공탄, 직매점 판매가격 추가배달료제외 (상표지정)	10 개	32.5	
175	303102	등 유	유공제품	2 ℓ	5.5	
176	303103	경 유	유공제품, 가정용 보일러용	20 ℓ	1.4	
177	303104	프로판가스	유공제품, 가정용 (배달료와 통값 제외)	10 kg	6.9	
178	303105	도시 가스	가정공급용 LNG 11,000 cal (서울, 수원, 인천), 복합가스 7,500cal (부산), 11,000cal (광주), 15,000cal (기타도시)	25 m ³	1.6	
179	303106	숯	연탄착화용탄 (상표지정)	1 개	0.7	
		(가구집기· 가사용품)	(57)		50.3	
		(일 반가구)	(12)		8.8	
180	401101	거 울	유리크기 45.5 cm × 90.9 cm 유리두께 2 mm 티크목테, 폭 5 cm, 두께 2 cm	1 개	0.2	
181	401102	탁 상시 계	시터즌, 시그네스 4CA-517 모타벨 장치 부착	1 개	0.1	
182	401103	벽 시 계	수정전자식, 플라스틱케이스 건전지사용 (상표지정)	1 개	0.4	
183	401104	책 상	철강제품, 편수책상 윗서랍 1개 편측서랍 2개, 1,065 mm × 760 mm × 750 mm (상표지정)	1 개	0.9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184	401105	의 자	평의자, 철제제품, 팔걸이 및 콧손 있는 것, 높이 45cm (상표 지정)	1개	0.4	
185	401106	양 복 장	보루네오 CL3012W(1,200 × 667 × 2,005 mm)	1조	3.3	
186	401107	전 화 기	금성 MFC월드폰 GS-3,500	1대	0.8	
187	401108	싱 크 대	스테인레스싱크 상판 오리표싱크 SD-1,200R 물통 2개 (2불) 1,200 mm × 550 mm	1개	0.8	
188	401109	장 식 장	우아미가구 모델 2410형	1개	0.9	
189	401110	화 장 대	보루네오가구 DR 1510W 1,196 mm × 404 mm × 1,616 mm	1개	0.6	
190	401111	식 탁	우아미가구 4~6인용, 모델 581형	1개	0.2	
191	401112	쌀 통	삼익쌀통 SV 80kg들이 삼익쌀통 SG 80kg들이 (전주, 춘천)	1개	0.2	
		(가정용기구)	(11)		11.8	
192	402101	전기다리미	금성사제품 EI 802B형	1개	0.1	
193	402102	선 풍 기	금성사제품 탁상형 FD 354S형 110-220 V 겸용	1대	0.6	
194	402103	냉 장 고	삼성특선냉장고 SR 201 AWG 200ℓ 220 V 겸용	1대	4.4	
195	402104	믹 서	금성사제품 M-1205형	1대	0.3	
196	402105	세 탁 기	금성사제품 WP 422W, 용량 4.2kg	1대	2.9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197	402106	전 기 밥 솥	후지카대원 DW204W, 16인용	1 개	0.4	
198	402107	보 온 밥 통	후지카대원 사각자아 318 SWDX, 19인용	1 개	0.4	
199	402108	가 스 렌 지	린나이 콤비 2-SV	1 대	1.5	
200	402109	난 로	석유용량 4ℓ, 반사경부착 한일전기(주)제품, 한일 OH-4700형	1 대	0.5	
201	402110	곤 로	석유용량 4.1ℓ, 한국후지카 K-N	1 대	0.4	
202	402111	자 전 거	3000리호 표준형(26인치) 라이트와 거울부착	1 대	0.3	
		(주 방 용 품)	(14)		5.9	
203	403101	은 수 저	성인용, 은 70%, 무게 75g 정도 젓가락 포함, 단순무늬	1 벌	0.3	
204	403102	스테인레스 수 저	성인용, 프레스제품, 젓가락포함 단순무늬(상표지정)	1 벌	0.2	
205	403103	주 발	스테인레스제품, 성인남자용 대접포함, 단순무늬, 두께 1.5 cm(상표지정)	1 벌	0.7	
206	403104	양 은 솥	직경 30cm, 두경포함(상표지정)	1 개	0.5	
207	403105	남 비	알마이트프레스제품, 직경 18cm (상표지정)	1 개	0.4	
208	403106	접 시	직경 20cm, 무늬단조(상표지정)	1 개	0.4	
209	403107	접	유리제품, 300ml들이 6개(두 산유리)	1 조	0.3	
210	403108	커피셋트	행남사, 게르만 백조중무늬 (유색 14Pes)	1 조	0.8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211	403109	주 전 자	알마이트프레스제품, 2 ℓ 들어 (상표지정)	1 개	0.1	
212	403110	후 라이 팬	남선제품알미늄실버스톤 코팅된 것 직경 28 cm 정도, 편수(뚜껑 없는 것)	1 개	0.5	
213	403111	보 은 병	금성에어포트 GAP-251, 2.5 ℓ	1 개	0.2	
214	403112	항 아 리	오지, 유광, 손잡이 달린 것 뚜껑제외, 40 ℓ 들어	1 개	0.3	
215	403113	밥 상	자개상(홍패, 민무늬) 45 cm × 60 cm × 28 cm	1 개	1.1	
216	403114	버 킷	프라스틱제품, 15 ℓ 들어, 뚜껑 포함(상표지정)	1 개	0.1	
		(기 사 잡 화 소 모 품)	(13)		8.9	
217	404101	건 전 지	로케트DM 34 mm × 60 mm 1.5V용	4 개	0.3	
218	404102	세 수 대 야	프라스틱제품, 직경 35 cm(상표 지정)	1 개	0.7	
219	404103	백 열 등	투명 110V-30W 일반조명용(상 표지정)	1 개	0.2	
220	404104	형 광 등	번개표, 주광색, 갓제외 20W 일반조명용(KS 표시 품)	1 개	0.3	
221	404105	성 낭	가정용대형, 개 피수 750~800 본 (상표지정)	1 통	0.1	
222	404106	양 초	6개 들어, 갑당 300 g 정도(상표 지정)	1 갑	0.1	
223	404107	고 무 장 갑	가정부익용 붉은색(상표지정)	1 켤레	0.5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224	404108	세탁비누	일반가정용 4호 500g (상표 지정)	1개	1.8	
225	404109	가루비누	럭키향하이타이, 비닐포장 900g 들이	1포	0.9	
226	404110	부엌용세제	트리오 (애경유지) 400g	1병	0.9	
227	404111	화 장 지 (두루마리)	흰색, 원통형, 두겹 35m 정도 (상표지정)	1개	1.8	
228	404112	화 장 지 (상 자)	유한크리넥스, 가정용, 사각형 280매	1통	0.6	
229	404113	살충제	에프킬러에어졸 (삼성제약) 수압분무식 520ml들이	1통	0.7	
		(침구 및 직물제)	(4)		6.0	
230	405101	이불	감량(실크), 대각기 4편 (2인용) 솜무게 1.5~2kg	1장	3.3	
231	405102	솜	면, 지대포장, 3kg들이, 흰색 (상표지정)	1포	0.3	
232	405103	모포	한일합섬 하이론 앙고라 185cm x 225cm	1매	0.5	
233	405104	수건	면 23S, 80cm x 32cm정도, 유색 (상표지정)	1매	1.9	
		(가사서비스)	(3)		8.9	
234	406101	오물수거비	단독 및 공동주택, 상주인구 8명기준 건평 20~30평 재산세 30,000~50,000원	1개월	2.7	
235	406102	인분계거비	일반가정, 18ℓ들이	1통	1.0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236	406103	가정부임 (피복및신발) (외 의)	파출부(YWCA) 급식제공 (45) (13)	1 일	5.2 74.4 39.8	
237	501101	마춤신사복 (여 름)	제일모직, 트로피칼(울 40%, 폴리에스터 60%) 인견 받침	1 벌	1.5	
238	501102	마춤신사복 (겨 울)	제일모직, 순모복지(색손) 52S/2, 인견 받침	1 벌	2.3	
239	501103	기성신사복 (여 름)	울 50%, 폴리에스터 50% (삼 성물산) 버킹검	1 벌	2.3	
240	501104	기성신사복 (겨 울)	울 50%, 폴리에스터 50% (삼 성물산) 버킹검	1 벌	3.5	
241	501105	숙녀복 (여 름)	선경직물, 스카이본디, 합성직물 팔없는 원피스, 나이론다후다받침	1 벌	5.2	
242	501106	숙녀복 (겨 울)	제일모직, 울 100%, 투피스	1 벌	7.8	
243	501107	코 트	제일모직, 슈퍼코트, 남자용 울 50%, 폴리에스터 50%, 인견받침	1 벌	2.8 1.6	
244	501108	한 복	성인여자추동용, 코오롱양단 상하 각각 2겹, 보통마춤	1 벌		
245	501109	학 생 복 (여 름)	여자중고등학생용, 크기 - M (SS팻션 뽀뽀로네), 상의 - 반소매브라우스 PLE7134, 하의 - 스커트 PLE6137 면 100%	1 벌	0.9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246	501110	학 생 복 (겨 울)	남자중 고등학생용, 춘추용기성복 크기 - M, 면 100% (제일모직) 상의 - NewMan, MM8-5402 하의 - NewMan S/#MM8-2201	1 벌	1.3	
247	501111	아 동 복 (여 름)	PAT제품 7~8세용, 상의 - T 셔츠 면 50%, 폴리에스터 50% 하의 - 반바지, 면 100%	1 벌	2.0	
248	501112	아 동 복 (겨 울)	오바형, 모자 달린 것, 7~8세 남아용 (상표지정)	1 벌	3.0	
249	501113	잠 바	카시미아춘추용, 성인남자용 작 크부작, 긴팔, 기성복 나이론다 후다 안받침	1 매	5.6	
		(스 웨 타· 셔 츠)	(4)		8.7	
250	502101	긴팔와이셔츠	남자성인용, 폴리에스터 80% 면 20% (상표지정)	1 매	0.9	
251	502102	반팔와이셔츠	남자성인용, 폴리에스터 80% 면 20% (상표지정)	1 매	0.2	
252	502103	남방셔어츠	남자성인용, 반소매, 폴리에스터 100%, 유색기성복	1 매	2.0	
253	502104	T 셔 어 츠	반팔, 카라부착, 인디안, 면 100%	1 매	5.6	
		(내 의)	(5)		5.0	
254	503101	남 자 내 의	남자성인용, 겨울용, 상하 60S 무색 (상표지정)	1 벌	1.3	
255	503102	여 자 내 의	여자성인용, 상하 7부 60S 뉴인나	1 벌	1.4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256	503103	런닝셔어츠	남자성인용, 반팔 40S, 흰색 (상표지정)	1 매	1.2	
257	503104	팬 티	즈로즈형, 38S, 남자성인용 (상표지정)	1 매	0.8	
258	503105	브 라 자	신염섬유제품 2106 호, 장식없 는 것.	1 매	0.3	
		(직 물)	(8)		2.7	
259	504101	광 목	면 16S × 16S, 폭 88.9 cm 표백안된 것 (상표지정)	91.4 cm	0.1	
260	504102	양 복 지 (여 름)	하일라이트 (제일모직), 울 50%, 폴리에스터 50%	91.4 cm	0.2	
261	504103	양복지 (겨울)	노블모드 (제일모직), 울 100%	91.4 cm	0.4	
262	504104	양 장 지 (여 름)	라미 (제일모직), 트레아세테이 트 80%, 폴리에스터 20%, 폭 111.76 cm (44 인치), 무늬 있는 것.	91.4 cm	0.2	
263	504105	양장지 (겨울)	순모 100% (상표지정)	91.4 cm	0.3	
264	504106	한 복 지	폴리에스터 100% 물실크 (코오롱)	91.4 cm	0.5	
265	504107	재 봉 사	TC (폴리에스터 65%, 면 35%) 60S/3 길이 5,000 m, 흰색 (상 표지정)	1 권	0.1	
266	504108	화 학 사	비들기표 (태광산업), 아크릴에 이스란 100%, 10S/2 편물용 유색	453.6 g	0.9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기 타)	(8)		4.0	
267	505101	남자 양말	성인 추동용, T/W(혼방사) (상표지정)	1 켤레	1.1	
268	505102	여자 양말	추동용, 아크릴 60%, 나이론 40%정도(상표지정)	1 켤레	0.4	
269	505103	아동 양말	추동용, 아크릴 60%, 나이론 40%정도, 8~9세용(상표지 정)	1 켤레	0.8	
270	505104	스 타 킹	라보라, 날색, 나이론 100% 밴드(무늬, 뒷줄 없음)	1 켤레	0.5	
271	505105	넥 타 이	폴리에스터 100% 최신행(상표 지정)	1 개	0.2	
272	505106	모 자	운동모자(테니스용), 창 없는것 면 35%, 폴리에스터 65%(코 오롱 스포츠)	1 개	0.3	
273	505107	면 장 갑	면사 23S, 흰색, 작업용	1 켤레	0.5	
274	505108	머 플 러	여자용스카프, 폴리에스터 100% (물실크) 80cm x 80cm 정도	1 매	0.2	
		(신 발)	(4)		11.5	
275	506101	남자 구두	홀그레인(FG) 피혁, 나이론 창 플라스틱굽, 검은색	1 켤레	3.1	
276	506102	여자 구두	홀그레인(FG) 피혁, 나이론 창 플라스틱굽	1 켤레	3.4	
277	506103	학생 운동화	월드컵하버드(동양고무) 백색(레자) 255mm	1 켤레	3.3	
278	506104	성인용운동화	프로스팩스, 그랜드슬램, 정구화 성인용 255mm	1 켤레	1.7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서 어 비 스)	(3)		2.7	
279	507101	양복세탁료	신사복 상하 드라이크리닝 (다림질 포함)	1 회	1.4	
280	507102	재 봉 료	부인 한복, 춘추용(화학사웃감 3겹) 수공임	1 벌	0.8	
281	507103	의복수선료	신사복 짜집기 3cm정도	1 회	0.5	
		(보건·의료)	(26)		72.4	
		(의 약 품)	(16)		21.1	
282-1	601101	영 양 제 (1)	동아제약, 추어볼미니막스 100 정들이	1 병	1.2	
282-2		영 양 제 (2)	일동제약, 아로나민골드 100 정 들이	1 통	1.2	
283-1	601102	감 기 약 (1)	동아제약, 판피린에스 20 ml들이	1 병	3.7	
283-2		감 기 약 (2)	동화약품, 판콜에이 30 ml들이	1 병	3.7	
283-3		감 기 약 (3)	광동제약, 광농탕 75 ml들이	1 병	3.7	
284-1	601103	항히스타민제(1)	유한양행, 콘택 600	10 정	0.3	
284-2		항히스타민제(2)	삼일제약, 엑티피드정	10 정	0.3	
285	601104	진해거담제	태평양제약, 브론치콤 100 ml들이	1 병	1.3	
286-1	601105	진 통 제 (1)	종근당제약, 사리돈	10 정	1.4	
286-2		진 통 제 (2)	삼일제약, 게보린	10 정	1.4	
287-1	601106	소 화 제 (1)	동화약품, 가스활명수 75 ml들이	1 병	0.6	
287-2		소 화 제 (2)	한독약품·웨스탈포르테	10 정	0.6	
288-1	601107	제 산 제 (1)	한국바이엘약품, 탈시드정	10 정	0.3	
288-2		제 산 제 (2)	일양약품, 노루모산 12P	1 갑	0.3	
289	601108	소화성궤양약	보령제약, 겔포스 20g들이 3개	1 갑	0.6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290	601109	항 생 제	중근당제약, 엠셀린 250 mg	10 캡슐	0.3	
291-1	601110	자양강장제(1)	일양약품, 원비D 100 ml들이	1 병	3.3	
291-2		자양강장제(2)	동아제약, 박카스D 100 ml들이	1 병	3.3	
292-1	601111	구 충 제(1)	유한양행, 스미스젠텔 2 T	1 갑	0.3	
292-2		구 충 제(2)	중근당제약, 옥산콤정 5 T	1 갑	0.3	
293-1	601112	소염진통제(1)	상아제약, 제놀 2 개입	1 갑	0.3	
293-2		소염진통제(2)	현대약품, 물파스 45 ml들이	1 통	0.3	
294	601113	피부연고제	영진약품, 캄비손연고 5 g 들이 튜브형	1 개	0.6	
295-1	601114	한 방 약 (1)	의료보험수가, 오적산	1 일	4.8	★
295-2		한 방 약 (2)	의료보험수가, 가미소요산	1 일	4.8	★
296	601115	인 삼	곡삼 4 년근, 1 등품 300 g 들이 50 편	1 상자	1.6	
297	601116	꿀	아카시아 천연꿀 1.8 kg 들이	1 병	0.5	
		(보건의료) (용품·기구)	(3)		2.4	
298	602101	안 경	남자근시용 2.5 디옵터, 유리알 국산테 (세루로이드 6 mm)	1 개	1.9	
299	602102	위 생 대	뉴프리덤 (유한킴벌리), 일반용 10 개	1 상자	0.3	
300	602103	반 창 고	대일밴드 10 매들이, 19 mm × 72 mm	1 통	0.2	
		(보건의료) (서비스)	(7)		48.9	
301-1	603101	진 찰 료 (1)	종합병원 재진, 의료보험수가	1 회	24.3	★
301-2	603102	진 찰 료 (2)	종합병원 재진, 일반수가	1 회	24.3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302-1	603102	입원료(1)	종합병원 보통실, 의료보험수가 (식사, 약대 제외)	1회	10.2	★
302-2		입원료(2)	종합병원 보통실, 일반수가 (식사, 약대 제외)	1회	10.2	
303-1	603103	분만료(1)	종합병원 보통실, 의료보험수가 경산(정상분만료+신생아관리 및 처치료+산전·산후 처치료)	1회	1.3	★
304-1	603104	X-Ray 촬영료(1)	종합병원, 흉부, 직접, 보통, 단 순촬영(14인치×14인치) 의료보험수가	1회	3.4	
304-2		X-Ray 촬영료(2)	종합병원, 흉부, 직접, 보통, 단 순촬영(14인치×14인치)일반 수가	1회	3.4	
305-1	603105	병원검사료(1)	종합병원 일반뇨검사, 정상루틴 검사 의료보험수가	1회	4.3	
305-2		병원검사료(2)	종합병원 일반뇨검사, 정 상루틴 검사 일반수가	1회	4.3	
306-1	603106	한방진찰료(1)	의료보험수가, 재진(의원급)	1회	2.0	
307-1	603107	한방침료(1)	의료보험수가, 침시술비(의원급)	1회	3.4	
		(교 육 : 교양오락)	(59)		114.9	
		(납 입 금)	(8)		53.5	
308	701101	납 입 금 (사립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 전학년 전계열	1학기	15.0	
309	701102	납 입 금 (국립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 전학 년 전계열	1학기	3.7	★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310	701103	납 입 금 (전문대)	기계과 1학년생(입학금 제외)	1학기	3.1	★
311	701104	납입금(사 고)	2학년생	1분기	11.5	★
312	701105	납입금(공 고)	2학년생	1분기	4.1	★
313	701106	납입금(중학교)	2학년생	1분기	11.0	★
314	701107	국민학교육성회비	재학생 1인	1개월	1.0	★
315	701108	유 치 원 비 (기 타 교 육)	보육료 및 기성회비 (11)	1개월	4.1 23.8	
316	701201	입시학원비	대입 학원 영어단과반	1개월	4.2	
317	701202	피아노학원비	관인 학원 초급반 1일 40분	1개월	3.2	
318	701203	주산학원비	초급반 1일 90분	1개월	5.9	
319	701204	전산학원비	프로그래머 과정 수강료(실습대 교재대 포함)	1개월	0.5	
320	701205	도 서 관 비 (국·공립)	성인, 일반열람실	1회	0.1	
321	701206	도 서 관 비 (사 설)	학생, 일반열람실	1일	0.7	
322	701207	교 과 서 (중학교)	2학년 전 과목	※	0.7	★
323	701208	교 과 서 (고등학교)	인문계 2학년 전 과목	※	0.7	★
324	701209	참 고 서 (사 전)	엣센스 영한사전(민중서림) 3×6판 인도지, 비닐표지 2,000페이지 정도	1권	1.6	★
325	701210	참고서(학습)	성문종합영어	1권	4.6	★
326	701211	학습용테이프	시사영어 중 2 교과서판 테이프 교재 포함	1질	1.6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문 방 구)	(9)		4.4	
327	702101	볼 펜	모나미 153 청남색 (KS 표시품)	1 개	0.2	
328	702102	연 필	문화연필, HB 향나무 종이포장 (12 지루) 지우개 부착되지 않은 것 (KS 표시품)	1 다스	0.5	
329	702103	공 책 (대)	중·고등학생용, 1급 3호, 내지 26매 모조지 19cm×26.5cm (상표지정)	1 권	1.3	
330	702104	공 책 (소)	국민학생용, 2급 2호, 내지 20매 중질지 17.6cm×25cm (상표지정)	1 권	0.6	
331	702105	도 화 지	캔트지, 수채화용 8절지	1 장	0.6	
332	702106	시 험 지	갱지 16절지	20 장	0.3	
333	702107	봉 투	모조지제품, 흰색	10 장	0.3	
334	702108	크레 파 스	18색, 크기 50mm 정도(상표지정)	1 갑	0.2	
335	702109	그 립 물 감	8cc 들어 12색 (상표지정)	1 갑	0.4	
		(신문·도서)	(7)		5.6	
336	703101	신문구독료	한국일보, 가정배달(12면)	1 개월	2.1	★
337	703102	주 간 지	주간한국	1 부	0.1	★
338	703103	여 성 지	주부생활(당월분)	1 권	0.9	★
339	703104	아 동 지	소년중앙(당월분)	1 권	0.7	★
340	703105	중 합 지	신동아(당월분)	1 권	0.2	★
341	703106	문 예 지	현대문학(당월분)	1 권	0.2	★
342	703107	도서(문고판)	삼중당문고 최근판	1 권	1.4	★
		(교양오락용 내 구 재)	(15)		13.6	
343	703201	T.V 수상기	삼성사제품, 원터치 CT-1456S	1 대	3.3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344	703202	전 축	14 인치 (35.56 cm), 안테나제외 태광산업, 애로이카 토폴즈GOLD7	1 대	1.8	
345	703203	라 디 오	금성사제품, 디지털시계라디오 RKD 314AC, 110/220V 겸용	1 대	0.4	
346	703204	녹 음 기	금성사제품, 카세트라디오 TSR 793 Q	1 대	1.7	
347	703205	피 아 노	삼익피아노, 호루젤 SU-118 P (건반 88개)	1 개	1.0	
348	703206	기 타	세고비아 SJ-61 형, 포크용기타	1 대	0.3	
349	703207	사 진 기	삼성미놀타 AF-E	1 대	1.0	
350	703208	필 림	코닥칼라 C-II, 24 장, 촬영용 35 mm 수입품	1 통	0.3	
351	703209	장 난 감	코코점보중합블럭 (코코산업) № 705 (캔포장)	1 개	1.3	
352	703210	삼륜자전거	어린이 4~6 세용, 1 인용 보통장식	1 대	0.4	
353	703211	운 동 기 구	테니스라켓, 한일제품 그라파트시 그마	1 개	0.4	
354	703212	등 산 용 품	버너 (로얄) № 7-1F (동일금속)	1 개	0.5	
355	703213	레 코 드 판	LP 형, 지름 30 cm, 스테레오 국내일류가수 신곡최신취업	1 장	0.2	
356	703214	카세트이프	선경 SH, 일반용 60 분	1 개	0.4	
357	703215	생 화	국화꽃, 싱싱한 것, 직경 5~6 cm	1 송이	0.6	
		(교 양 오 략) (서 비 스)	(9)		14.0	
358	703301	외국어학원비	영어회화 초급반, 한국인 강사 1 일 60 ~ 100 분 강의	1 개월	1.1	
359	703302	자동차학원비	지정자동차학원, 본과 영업반	1 개월	2.0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360	703303	영화관람료 (방 화)	8주 과정 수강료(입학금, 책값 면허수수료 제외) 총천연색, 상영시간 100분 정도 입장세 및 문예진흥기금 포함 (각종 구호금 제외)	1회	0.4	★
361	703304	영화관람료 (외 화)	총천연색, 상영시간 100분정도 입장세 및 문예진흥기금 포함 (각종 구호금 제외)	1회	0.9	★
362	703305	T.V시청료	일반가정 1대	1개월	4.8	★
363	703306	고궁입장료	고궁 및 유원지, 성인	1회	0.5	
364	703307	체육관입장료	프로야구입장료, 성인일반석 (내야석)	1회	1.6	
365	703308	사진촬영료	명함판, 칼라 3매(상류사진관)	1조	0.6	
366	703309	사진인화료	후지칼라필름, 현상인화요금	1매	2.1	
		(교통·통신)	(16)		64.6	
		(교 통)	(11)		45.9	
367	801101	시내버스로 (도시형일반)	성인 시내 1구간	1회	14.4	
368	801102	시내버스로 (도시형학생)	학생 시내 1구간	1회	4.4	
369	801103	시내버스로 (좌 석)	성인 시내 1구간	1회	2.0	
370	801104	시외버스로	포장도로 일반여객	1km	5.4	★
371	801105	고속버스로	서울~각도시간, 성인 편도	1회	3.7	★
372	801106	택 시 료	시내 6km	1회	8.2	
373	801107	기차표(비둘기)	대인 40km	1회	0.5	★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374	801108	// (통 일)	대인 230 km 보통실	1 회	1.7	★		
375	801109	// (무궁화)	대인 240 km 보통실	1 회	1.1	★		
376	801110	전 철 료	(서울) 1,2,3,4 호선 1 구역 (부산) 1 구역 (인천) 동인천←서울역 (수원) 수원←서울역	1 회 1 회 1 회 1 회	4.2	★		
377	801111	항 공 료	대한항공, 서울~각 도시간 성인, 편도	1 회			0.3	★
		(통 신)	(5)				18.7	
378	802101	시내전화료 (주택용)	가정용 1 대 시내통화료(200 통화) 세금포함	1 개월			14.5	★
379	802102	시외전화료	서울←각 도시간 DDD 3분	1 회	2.4	★		
380	802103	공중전화료	시내통화	1 회	1.5	★		
381	802104	우편료(국내)	통상우편 1 종(규격봉서 50 g 이내)	1 통	0.2	★		
382	802105	// (국제)	항공서간	1 통	0.1	★		
		(잡 비)	(29)		38.0			
		(이미용품)	(9)		7.4			
383	901101	화 장 비 누	다이알비누(동산유지) 140 g	1 개	0.8			
384	901102	치 술	락키 777 성인용(케이스포함)	1 개	0.2			
385	901103	치 약	락키치약 150 g들이(대형)	1 개	1.0			
386	901104	화 장 크 림	아모레 리바이탈 바이오레몬크림 70 g(태평양화학)	1 갑	2.7			
387	901105	화 장 분	아모레 나그랑콤팩트 15 g(태평 양화학)	1 갑	0.4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388	901106	화 장 수	쥬단학 ST 크리어스킨 130 ml (한국화장품)	1 병	0.6	
389	901107	삼 푸	푸로틴삼푸(태평양화학) 500 g	1 병	1.2	
390	901108	린 스	태평양화학 리도헤어린스 250 ml	1 병	0.4	
391	901109	면 도 날	도루코(한일공업) 10매	1 갑	0.1	
		(이미용서비스)	(6)		11.0	
392	901201	이 미 용	성인(착유포함), 중류	1 회	1.7	
393	901202	미용료(고데)	성인여자(가발, 컷트료제외), 중류	1 회	1.3	
394	901203	미용료(파마)	성인여자, 보통파마(B급), 중류	1 회	1.3	
395	901204	미용료(컷트)	성인여자, 중류	1 회	1.7	
396	901205	목욕료(성인)	일반대중탕	1 회	4.5	
397	901206	목욕료(아동)	일반대중탕(7세이하)	1 회	0.5	
		(장 신 구)	(8)		8.8	
398	902101	가 방	중고학생용 포직, 멜빵부착 (상표지정)	1 개	1.3	
399	902102	우 산	협립제품, 흙살 10개, 2단 데드론, 검은색	1 개	0.6	
400	902103	양 산	협립제품, 흙살 8개, 3단 (폴리에스터 100%)유색	1 개	0.1	
401	902104	일반손목시계	오리엔트 미네랄글라스 16의 아지로밴드 B65 F 001/30 m방수	1 개	0.7	
402	902105	전자손목시계	오리엔트 589 C621, 야나로그 성인 남자용	1 개	0.9	
403	902106	금 반 지	순금(99%) 3.75g, 무늬단조 수공임 포함	1 개	4.5	

일련 번호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가중치	비고
404	902107	핸 드 백	합성피혁제품, 최신중형, 보통장 식 단색(상표지정)	1 개	0.6	
405	902108	허 리 띠	쇠가죽양면 보통장식 폭 3 ~ 3.5 cm정도	1 개	0.1	
		(담 배)	(1)		8.9	
406	903101	담 배	각종 권련	※	8.9	★
		(숙 박 비)	(2)		0.9	
407	904101	숙 박 료 (호 텔)	2급 독방, 침대, 1인 1박 독탕 부설, 식사 제외	1 일	0.3	
408	904102	숙 박 료 (여 관)	갑류, 1인 1박, 독방, 독탕 부설 식사제외	1 일	0.6	
		(수 수 료)	(3)		1.0	
409	90510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1 통	0.4	
410	905102	호 적 초 본	호적초본발급	1 통	0.1	
411	905103	인 감 증 명	인감증명발급	1 통	0.5	

Ⅱ. 조사상 유의품목의 참고사항

1. 식 료 품

곡 물

- 쌀 : 품질이 다양하나 크게 나누어 일반미와 밀양 및 통일계통의 쌀이 있다. 일반미는 시장출회량이 많고 밀양 및 통일계통은 수매를 하여 정부미로 공급되고 있다.

또 일반미도 상품과 품종을 구분하여야 하며 대상처별로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계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동일품질규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찰쌀 : 재배지토양에 따라 논찰쌀과 밭찰쌀이 있고 품종에 따라 일반찰쌀과 통일계통이 있다.

본 조사에 있어서는 일반찰쌀로 논찰쌀을 조사한다.

- 잡곡류 : 현재 조사하고 있는 조사단위와 대상처에서 거래되는 단위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환산하여 기준단위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콩의 경우 백태와 검정콩 및 나물콩 등 여러종류가 있으나 메주용인 백태를 조사하고 거래단위도 7.2 kg, 7.5 kg 등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중량을 환산하여 조사하고 그외 말(斗)로 조사가 계속되었다면 말(斗)로 조사토록 한다.

곡물가공품

- 밀가루 : 강력분과 중력분으로 구분되고 중량과 상표도 다양하므로 중

력분으로서 정하여진 기준단위 및 중량을 상표지정하여 조사한다.

- 두 부 : 공장제품과 가정제품인 손두부가 있으나 공장제품인 두부를 조사한다.
지역에 따라 규격 및 중량이 다르므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보고한다.
- 라 면 : 복수규격이므로 지정된 상표 및 품질규격을 유의하여 조사한다.

육 류

- 쇠고기, 돼지고기 : 지육과 정육으로 구분되며 정육을 조사한다.
또 부위별로 가격이 다양하므로 쇠고기는 중등육으로서 국거리용을,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아닌 정육을 조사하여야 한다.
- 닭고기 : 일부지역에서 목, 발,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는 지역도 있으나 규격이 변경될 시는 즉시 병행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한다.

유 란

- 달걀 : 대란과 특란이 있으나, 특수시장을 제외한 일반시장에서는 대란을 조사한다.
- 목장우유(배달) : 협동조합에서 고정적으로 일반가정에 배달하여 주는 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제과점이나 일반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우유는 흰우유와 커피우유, 초코렛우유 등이 있으므로, 종이포장된 흰 우유를 조사한다.

- 목장우유(시판) : 일반 점포에서 판매하는 우유를 조사하고 배달우유나 제과점우유는 조사해서는 안된다.

염 건 어 개

염건어개는 규격이 다양하고 품종 및 중량이 다양하므로 항상 조사규격을 숙지하고 그 규격을 유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마른멸치 : 종류가 다양하므로 품종과 규격을 정하여 조사한다.

(예)

주바, 죽방, 고주바, 오사리, 동사리, 늦사리, 다시멸치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되고 있으니 조사규격은 국끓일때 넣기도 하고 볶아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한다.

- 마른오징어 : 오징어는 크기와 중량에 따라 주어지는 다양한 명칭이 있으나 크기에 맞는 중량과 명칭을 정하여 조사한다.

(예)

특대, 왕대, 중대 등

- 생선묵 : 지역간에 상표가 다르므로 삼호표를 우선으로 하되 중량은 200g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착오없도록 한다.

선 어 개

생선은 신선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다. 따라서 냉동 및 생물(냉동되지 않은 것을 남아라고도 함)로 구분하여 전장길이(입에서 꼬리끝까지)를 조사한다. 일부지역에서 꼬리를 제외한 규격을 조사하는 예가 있으니 품질 규격을 숙지하여 생선의 전장 길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알아두었다가 조사

에 임하도록 한다.

단, 갈치는 꼬리끝에서 폭이 1 cm되는 곳까지 하여 60 cm정도 길이를 조사한다.

- 명태 : 1 상자에 25 마리 정도(5 통)의 한마리로 무게는 800 g 정도를 조사한다.
- 풍치 : 시장에서 판매시는 1 마리씩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1,000 원에 4 마리 등으로 거래되니 환산에 유의한다.
(예) $(1,000 \text{ 원} \div 4 \text{ 마리}) \times 10 \text{ 마리} = 2,500 \text{ 원}$
- 조개 : 바지락을 깐것이며 싱싱한 것을 조사하고 조개젓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기 : 부세나 수조기를 조사하고 참조기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 갈치 : 먹갈치와 은갈치가 있으나, 은갈치를 조사하고 일명 풀치라고 하는 것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 굴 : 양식굴과 자연산굴이 있으므로 양식굴을 조사한다.

채 소 류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기준단위에 준하여 환산하고 신선도 및 품종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으므로 특히 유의토록 한다.

- 무우 : 잎을 제거한 상태의 무게를 환산한다.
- 배추 : 결구용 호배추를 조사하며 봄, 여름, 가을배추로 구분하여 조사 표에 기입한다.
- 양파 : 땅에 든것을 조사하며 1 kg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상치 : 꽃상치와 잎상치로 구분하며 잎상치를 조사한다.

- 버섯 : 양송이 재배버섯을 조사하며, 자연산은 제외한다.

해 조

- 김 : 자연산과 개량김이 있으나, 개량김으로서 검정색인 김밥용 증품을 100장(1속)단위로 조사한다.
- 미역 : 자연산과 양식미역이 있으며 미역의 종류는 대장각, 중각, 단각 등이 있으므로 단각을 조사한다.

채 소가공품

- 당면 : 공장제품으로 중량이 다양하므로 중량에 유의하여 조사한다.

과 일

과일은 지역간에 상자당 중량과 갯수가 조금씩 상이하므로 우선 중량 및 갯수를 파악한 후 조사에 임하면 응답자와의 거리감없이 대화할 수 있다. 또 상자당 갯수에 따라 부르는 명칭(다이)도 다르다.

그러므로 1 상자 무게를 파악하고 조사하려는 무게로 나누면 상자당 갯수가 된다. 예를 들면 사과부사의 경우 1 상자가 15 kg이면 조사규격이 300 g 정도이므로 51 개 정도(5 다이)가 된다.

따라서 51 개 정도(5 다이)의 개당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10 개로 곱하면 조사가격에 접근할 수 있다.

- 배 : 배는 장십량, 신고, 만상길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장십량은 제일 먼저 9~10 월경에 출회되고 신고는 저장시설이 잘된 요즈음은 10 월부터 이듬해까지 출회되며 만상길은 12 월말경부터 5 월경까지 출회된다.

- 과실통조림 : 복숭아 통조림으로서 백도를 조사한다.

유 지

- 참기름, 들기름 : 일반 기름집에서 짜는 기름을 조사한다.

조 미 료

- 고추 : 재래종과 개량종으로 구분되고 또 양건과 화건으로 구분된다. 그중 재래종을 완전히 말린 것으로 꼭지를 제거한 중품인 화건을 조사한다.
- 마늘 : 장기저장할 수 있는 한지형과 단기보관용인 난지형의 마늘이 있다. 접마늘은 한지형이고 칸마늘은 주로 난지형인 중품을 조사한다.

빵 및 과자

빵 및 과자는 중량이 변경되어 값이 변동되는 예가 많으니 조사시 항상 상표와 중량을 확인하여 중량이 변경시는 환산하여 보고한다.

- 크림빵 : 50g에서 45g으로 중량만 감소되고 가격이 100원인 경우

(예) $(100 \text{ 원} \div 45 \text{ g}) \times 50 \text{ g} = 111 \text{ 원}$

- 아이스크림 : 100CC에서 110CC로 중량이 늘고 가격도 15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예) $(200 \text{ 원} \div 110 \text{ CC}) \times 100 \text{ CC} = 182 \text{ 원}$

음 료

음료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조회사가 다양하므로 상표

를 확인 조사한다.

- 보리차 : 중량이 다양하므로 공장제품을 비닐포장이 되어있는 것을 조사 환산한다.

술

술은 병보증금(맥주, 소주)을 포함한 가격을 조사하고 탁주는 일반 소매 점포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일부지역에서 음식점객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조사하는 예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외 식

외식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대중적으로 많이찾는 대상처를 선정하고 너무 고급스럽거나 협소한 곳은 대상처를 선정시 고려하도록 한다.

특히 경양식집이나 다방을 선정할 때는 일반인이 많이 출입하는 대상처를 선정 조사토록 한다.

2. 식료품이외

주 거 비

- 주거비는 지불집세, 주택설비재료, 설비수리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다.
- 집세는 임대가구의 방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 가구주의 변동이 있어도 대상처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대상가구를 변동하여서는 안된다.
- 주택설비재료의 품질규격이 다양함으로 상표 및 품질규격을 숙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도배지, 시멘트 등 상표지정 품목은 대중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가격계열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설비 수리서비스는 일반가정집에서 낱일로 일하는 것을 조사하며 중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되며 순수한 품삯을 조사한다.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할때 받는 임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광 열 · 수 도

- 상·하수도료는 지방별로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연탄은 가정용 소형 구멍탄으로 조사하며 배달료의 경우 거리의 원근 및 층수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가격에서는 제외된다.
(단, 기본배달료는 포함된다.)
- 경유는 저유황과 고유황이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저유황이 유통되므로 확인한 후 조사한다. (품질규격은 저유황)

- 도시가스는 도시별로 열량의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기존열량을 숙지한 후 변동 유·무를 확인 조사한다.

가구·집기 가사용품

가구집기 가사용품 조사상 유의사항

- 가구집기, 가사용품 : 소비자의 소비성향 선호도가 고급화 추세로 나감에 따라 다양한 품질규격이 출고되므로 해당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을 정확히 숙지하여 조사에 임해야 한다.
 - 책상 : 편수책상 : 책상다리가 철회와 알미늄으로 생산출고 되고 있으므로 알미늄과 철회재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되므로 조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부지역에서는 알미늄으로 조사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자전거 : 일반용과 경주용이 있으므로 조사규격에 명기된 표준형이란 일반용으로서 실용 자전거를 말하며 실용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짐받이 크기가 대·중·소로 되어 있는데 짐받이가 소형인 경우에는 알미늄과 철회로 된 것이 있는데 표준형은 짐받이가 소형인 철회로 된 것을 말한다.
- 주방용품 : 주방용품류 조사에 있어서 상품의 크기를 주로 직경 몇 cm로 조사에 임하는데 응답자 자기들의 통용되는 용어로 몇호 몇인치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조사시 우리 조사규격을 질의 하였을 때 그 규격이 통용되는 용어를 메모하여 조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 양은술 : 직경 30 cm로 질의할 경우 응답자가 몇호인지 착오를 나타내므로 어느제품 몇호로 지정하여 질의함으로써 응답상 착오가

없도록 한다.

- 접시 : 직경 20 cm로 되어 있는데 질의시 응답자들의 통용어로 되어 있는 인치 (inch)로 질의하여 조사에 착오 없도록 한다.

－ 가사 집화소모품

- 세탁비누 : 상품의 고급화로 향료를 첨가하여 여러 종류의 가정용 세탁비누가 생산 출고되므로 품질규격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가정용 4호를 조사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4호가 출고되지 않고 3호가 출고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4호와 3호의 중량 및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환산 조사하여야 한다.
- 화장지 : 가정용 사각형을 조사하며 시중에 출고되는 상품중 내용물에 무늬가 있다든가 향수를 첨가한 제품이 출고되고 있어 가격상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조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가사서비스

- 오물수거비 : 내무부 조례에 의한 부가기준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수거비고지서 발부가 전에는 6개월 단위로 발부되던 것이 1개월 단위로 발부되니 조사에 유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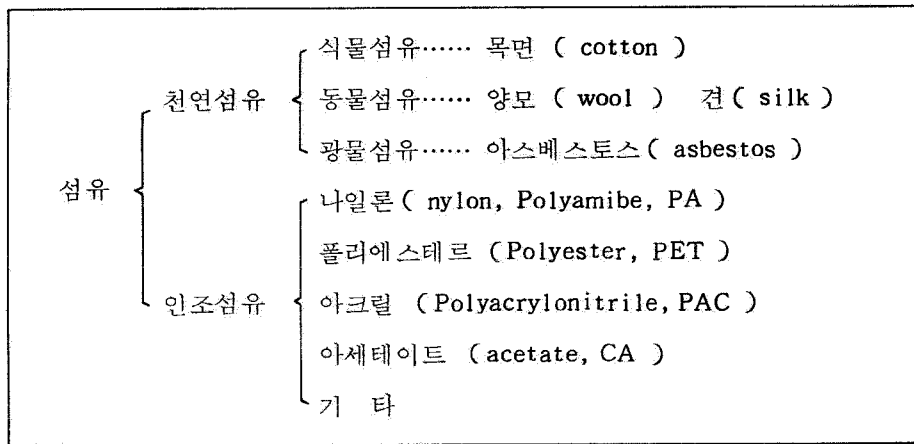
피복 및 신발

피복류는 유행에 민감하므로 특히 상표, 원료의 성분(수, 데니어, 혼방비율 등)색채, 형태등에 항상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수와 데니어는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는 면직, 모직 물에, 데니어는 생사, 나이론 직물에 사용된다.

수(S) : 면직물의 경우는 원면 1 파운드(453.6 g)로 길이 840 야드(YDS)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하며, 모직물의 경우는 1 kg의 원모로 1,000 m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한다.

데니어 : 나일론 섬유 1 g으로 9,000 m의 실을 뽑았을 때의 굵기를 말하며 생사 450 m의 무게가 0.05 g일때 1 데니어라 한다.



- 신 사 복 : 남성복의 기본형으로 가장 널리 착용되는 상, 하 동일재료와 색으로 봉제된 옷을 말한다.
매년 패션이 달라지고 혼방비율이 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시 유의해야 한다.
- 와이셔츠 : 화이트 헤드셔츠 (White head shirts)라는 뜻에서 전래된 말로서 소재로는 T/C, 실크, 마, 면 등을 사용한다.
T/C 혼방제품을 조사하고 있으나 혼방비율이 자주 바뀌므로 조사시 혼방비율에 유의해야 한다.
- 코 트 : 재킷이나, 수트위에 덧 입는 옷의 종류를 코트라 한다.
현조사 품목은 울 (50 %) 폴리에스테르 (50 %)의 혼방제품

이며 조사시 유의사항은 안감 및 부속품의 변경에 따른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남성내의 : 몸을 냉한으로 부터 보호하고 땀 등의 분비물을 흡수하며 겉옷의 더러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소재는 100% 면, 크레이프, 모시메리등이 있으며 런닝셔츠도 이에 포함된다.
현조사품목은 60 S이므로 수(S)의 변동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아동복 : 6~12세의 국민학교 아동복이다. 바지는 반바지, 긴바지 등이 있으며 상의는 재킷, 점버형 등이 있다.
여름용 천으로는 면저지, 데님등이 있고 겨울용 천으로는 저지 개버딘 등이 있다.

보건의료

- 의약품은 대부분이 복수 규격이며 특히 용량과 수량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격변동은 물론 용량과 수량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환산 가격을 조사하고 변동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한다.

(예)

- 1) 용량변동 : 소화제, 가스활명수 70 ml → 75 ml 들이
 - 2) 수량변동 : 소화성궤양약 겔포스 4개 → 3개
- 안경 : 테의 종류가 다양함으로 가격계열의 동질성유지를 위하여 세 루로이드 국산테 일지라도 품질규격을 잘 선정후 숙지하여 일관성 있게 조사한다.

- 보건의료 서어비스 조사는 병원마다 기준이 다양함으로 기존 대상처의 규격을 잘 숙지하여 일관성있게 조사한다.
병원검사료는 9종까지 조사하나 병원마다 검사종류가 다름으로 종별 가격을 파악하여 합산 조사한다.

교육·교양·오락

- 납입금 : ① 조사시 국공립 및 사립구분 명시요망
② 등락사유 명시
③ 의학계열에 있어서 예과·본화 명시
- 학원비 : 입시학원, 피아노학원, 주산학원, 외국어학원 등의 학원비조사시 실습비 및 교재대가 포함조사 되는 사례가 있는데 분리될 경우는 포함 조사하여서는 않되며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는 포함 조사해도 된다.
- 문방구 : 공책(대), (소)
조사시 내지 매수도 확인하여 조사에 임해야 한다.
- 운동기구(테니스라켓) : 테니스라켓은 목재가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이 개발되어 시중에 많이 출회되고 있다. 조사시 유의할점은 테니스라켓마다 부여되어 있는 고유번호와 품명을 숙지 변동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 생화(국화) : 주로 경조화로 사용되며 수요가 많다. 대도시 근교에서 노지재배도 성행되고 있으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재배가 대부분이며 대국(1송이 가꾸기) 소국(여러 송이가꾸기)이 재배되고 있다. 대국 1송이를 조사한다.

- 등산용품(버너) : 버너는 취사용구중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석유용, 알콜용, 부탄가스용 등이 있다. 모양은 원통형과 사각형이 있으며 유티머스, 스비아 등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버너들이다. 버너도 품목마다 고유번호가 있으므로 조사시 고유번호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 장난감 : 일반적으로 장난감이라고 하는 완구는 어린이의 지적 발달과 정서함양에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도구이다. 재질별로는 봉제완구, 플라스틱완구, 목재완구 등이 있고 기능별로는 시청각완구, 놀이완구, 운동완구 등이 있다. 품목마다 고유번호가 있으므로 조사시 고유번호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 피아노 : 피아노의 정식이름은 피아노 포르테라고 한다. 모두 88개의 건반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로는 입형피아노와 그랜드형 피아노가 있다. 현 조사규격은 입형식 가정용 피아노로 모델번호를 항상 숙지 조사에 유의해야 한다.

교통 통신

- 시내버스료(좌석) : 차량고급화에 따른 냉난방설치로 가격변동이 예상됨으로 유의한다.
- 택시료 : 시간거리 병산제가 실시되는 경우 요금 승인기관에 산출근거를 확인 조사한다.

기타 잡비

- 샴푸 : 푸로틴샴푸와 리도푸로틴샴푸가 있으며 태평양화학 대리점에서
둘다 취급하나 푸로틴샴푸로 조사한다.
- 이미용서비스요금 : 특수서비스(손톱손질, 마사이지 등)로 인한 팁을
제외한 금액을 조사한다.
- 가방, 핸드백, 허리띠 : 품질규격이 다양하므로 상품과 규격을 잘 선정
하여 일관성있게 조사한다.
- 우산 양산 : 흠살 갯수와 천의 성분을 유의하여 조사한다.
- 금반지 : 단순무늬로 특히 수공임이 포함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조사한
다.

Ⅲ. 소비자물가 각종 조사표류

집세(방세) 조사표

(매중 매)

지정통계 111-11-08

지역번호	조사구번호	시·도	구·시·군	동·읍·면

확 인 자 ①

198 년 월 분

조사담당 ②

가 구 번 호	주택종류	규 격	집세종류	가구현황	전 월 (천원)						금 월 (천원)						비 고	
					보증금		매지불액		월평가액		보증금		매지불액		월평가액			
					억	천	백	십	천	백	천	백	억	천	백	십		천
12	단아연 [독트림]	123	1전세	1신규입동	2폐지출기타													
12	단아연 [독트림]	123	2월세	3신입동	4전동													
12	단아연 [독트림]	123	1전세	1신규입동	2폐지출기타													
12	단아연 [독트림]	123	2월세	3신입동	4전동													
12	단아연 [독트림]	123	1전세	1신규입동	2폐지출기타													
12	단아연 [독트림]	123	2월세	3신입동	4전동													
12	단아연 [독트림]	123	1전세	1신규입동	2폐지출기타													
12	단아연 [독트림]	123	2월세	3신입동	4전동													
12	단아연 [독트림]	123	1전세	1신규입동	2폐지출기타													
12	단아연 [독트림]	123	2월세	3신입동	4전동													
12	단아연 [독트림]	123	1전세	1신규입동	2폐지출기타													
12	단아연 [독트림]	123	2월세	3신입동	4전동													
12	단아연 [독트림]	123	1전세	1신규입동	2폐지출기타													
12	단아연 [독트림]	123	2월세	3신입동	4전동													
12	단아연 [독트림]	123	1전세	1신규입동	2폐지출기타													
12	단아연 [독트림]	123	2월세	3신입동	4전동													
12	단아연 [독트림]	123	1전세	1신규입동	2폐지출기타													
12	단아연 [독트림]	123	2월세	3신입동	4전동													

조사표 기입요령

● 난 외 사항

1. 조사시점 : 매월 25일
2. 지역번호 :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대전 06 광주
07 전주 08 춘천 09 청주 10 수원 11 마산
3. 조사구번호 : 조사구번호는 5 단위로 기입한다(예, 10263.)
4. 조사대상가구 : 도시가계조사대상가구(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및 경제활동대상가구(전주, 춘천, 청주, 수원, 마산)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 있는 모든 임대가구(농가, 어가, 외국인가구 및 비거주용가구 제외)를 조사한다.

● 난 내 사항

1. 가구번호 : 가구번호는 도시가계조사가구 및 경제활동대상가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구번호(8 단위)를 기입한다.
2. 주택종류 : 주택의 외관상 형태로 구분하여 해당번호란에 ○으로 표시한다.
※ 단독주택인 경우(예, ①. 단독주택 2. 아파트, 연립)
3. 규 격 : 규격은 방의 수에 따라 해당번호란에 ○으로 표시한다.
○ 방 1개인 경우(예, ①. 방 1개 2. 방 2개 3. 방 3개)
※ 단, 독채인 경우 방 3개에 포함한다.
4. 집세종류 : 집세는 전세, 월세로 구분하며 해당번호란에 ○으로 표시한다.(월세에는 보증부월세, 삭월세, 단순월세가 포함된다).
※ 월세인 경우(예, 1. 전세 ② 월세)
5. 가구현황 : 집(방)세 대상의 변동이나 대상 가구내 세입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해당 번호란에 ○으로 표시한다.
 - 1) 신규 : 도시가계조사가구 및 경제활동대상가구에서 새로 임대를 놓거나 공가(빈방)으로 있다가 임대를 하는 경우로 금월금액만 기입한다.
 - 2) 폐지 : 집주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임대를 원치 않거나 도시가계조사대상가구나 경제활동대상지역이 교체된 경우로 전월금액만 기입한다.

3) 전입 : 집(방)의 대상은 변동이 없으나 새를든 가구의 변동으로 새로 전입한 가구를 말한다.

이때, 집(방)세 금액은 전월금액과 금월금액을 동시에 기입 하며 전월금액은 전입전가격에 해당된다.

주의사항 : 집(방)세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세의 종류가 달리 이루어진 경우(전세↔월세)에는 「5변동」가 구로 처리된다.

4) 전출 : 세든 가구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로 전월금액만 기입한다.

5) 변동 : 기존세입자의 집세종류(전세↔월세)가 변하는 경우, 또는 전출과 전입이 이루어지면서 집세종류(전세↔월세)가 변동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비고란에 「전입가구변동」이라고 기입한다. [※ 해당 변동전의 전월금액과 변동후 금월금액을 각각 기입한다].

6) 기타 : 전출과 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출후 공가]나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으로 표시한다.

6. 금 액

○ 공통사항

① 단위가 '천원'이므로 기입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② 금액란중 해당이 없는 란에는 사선(\)을 긋는다.

가. 전세는 보증금만 기입한다.

나. 월세중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매월 지불액, 월세평가액을 모두 기입한다. 이때, 월세평가액은 보증금없이 단순한 월세로 임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삭월세는 보증금란에 조사시점(25일)을 기준하여 공제 되고 남은 나머지 보증금만 기입하고, 매월 지불액란에는 월별 공제액을 기입한다.

라. 단순월세는 매월 지불액만을 기입한다.

7. 비 고 : 비고란에는 등락사유 및 「5변동」에 대해 전입과 동시 변동에 대한 전입표시, 「6기타」에 해당되는 사항(전출 후공가)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집세조사 변동 집계표

(매중 매)

지정동계 111-11-08

지역번호	시·도

198 년 월 분 소 장 ㉠

사무소 작성자 ㉡

조사구 번호	가 번호	구 번호	주택종류 1 단 2 아파트 3 연립	구 격 1 방1개 2 방2개 3 방3개	집세종류 1 전세 2 월세	가구현황 1 가구 2 전입 3 전출 4 가내	전 월 (천원)			금 월 (천원)			비 고	
							보증금	매 월 지불액	월 세	보증금	매 월 지불액	월 세		
														평가액
총변동 가												가구		

집세 (방 세) 조사 대상 가구 명부 (매 층 [] 매 [] 소)

조사구번호 ()	주소	구	구역	작성년월 198 년 월			조사담당자		
				가 번	구 호	가구주명 성	동자 번 일 자	변동사유	동자 번 일 자

집세 (방세) 조사대상가구변동보고서

계 장

조사담당자

조사구번호 (

)

작성년월

198 년 월

일

일련번호 (가구번호)	가구주명 성	규격	주 소	변동 일 자	변동(전입, 전출, 신규, 폐지)사유

영 화 관 랑 료 조 사 표

도 시 소 장 ㉠

198 . 조사원 ㉠

품 질 규 격		총천연색 상영시간 100분 정도(뉴스, 선전제외) 입장세를 포함 (단. 각종구호금 제외)				
극 장 명	※영 화 관 분 구	영 화 명	상 영 일 자		요 금	
			부 터	까 지	방 화 의 화	의 화

국민학교납입금조사표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소장
조사담당자

비목	기별	1 / 4 분기	2 / 4 분기	3 / 4 분기	4 / 4 분기	비 고
육성회비						
합 계						

19년 월 일
학교장 인

기입요령 위와 같이 확인함

기입요령

1. 본 조사는 매분기말월 5일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실시한다.
2. 월별, 학기별 혹은 년간으로 징수할시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3. 조사하는 분기나 이미 조사된 분기는 징수한 금액을, 아직 징수하지 않은 분기는 징수예정금액을 기입한다.
4. 징수액이 전분기에 비하여 변동이 있을시(예: 추가징수)는 그 사유를 비교란에 기재한다.
5. 금액란에는 각등급별 1인당 징수액만을 기입한다.
6. 본 조사표의 내용은 필히 학교장의 확인을 요한다.

지정통계 111-11-08

국·공·사립구분	국·공·사
인문·실업구분	인문·실업
실업고교	과

중, 고등학교 납입금 조사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소 장 ㉔

조사담당자 ㉔

시 도 구 시

비목	기별	연간총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생활활관비							
합 계							

위와 같이 확인함

19 학교장 일 적인

기입요령

1. 본 조사는 매분기말월 5일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실시한다.
2. 조사하는 분기나 기조사된 분기는 정수한 금액을 아직 정수하지 않은 분기는 정수에정금액을 기입한다.
3. 정수액이 전분기에 비하여 변동이 있을시(예: 추가정수)는 그 사유를 비교란에 기재한다.
4. 본 조사는 2학년생의 납입금을 조사한다.
5. 3기분으로 나누어 정수할 시는 사유를 비교란에 기입한다.
6. 본 조사표의 내용은 필히 학교장의 확인을 요한다.

지정통계 111-11-08

공·사립구분	국·공·사
계열별	계

대학, 전문대학 입학금 조사표

시 도 구 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㉔
 소 장 ㉕
 조사담당자 ㉖

항목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비 고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입 학 금									
수 업 료									
기 성 회 비									
학도호국단비									
실업실습비									
자율적경비									
기 타									
계									

위와 같이 확인함

198 년 월 일 총 (학) 장 ㉗

기입요령

1. 대학은 전학년을 계열별(인문사회, 이학, 공학, 예능, 체육, 의치학, 약학)로 조사하고 그 계열을 명시한다.
2. 의치학계열에 예과 분과를 학년표시란에 명시한다.
3. 전문대학은 기계과 또는 간호학과를 학년별로 그 학과를 명시한다.
4. 본 조사는 매 학기 첫달(3,9월) 5일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조사한다.
5. 이미 정수액이 확정된 학기는 정수금액을 기입하고 아직 정수하지 않은 학기는 정수예정금액을 기입한다.
6. 정수액이 전학과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을 때(예: 추가정수 등)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7. 부 조사표의 내용은 필히 총 (학) 장의 확인을 요한다.

조사구번호

 { 품질규격 }
 { 지정상표 }
 { 조사대상처 }

 전 국 소 비 자 료 가 조 사
 변 동 보 고 서

작성일자 198 년 월 일		시		시장		조사담당자		비 고
품목번호	품 목 명	구	신	변동이유 및 주소	변동시장가격		조사시점가격	
					구 / 신	구 / 신	구 / 신	구 / 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비 자 물 가 조 사 대 상 처 명 부

일련 번호	대 상 처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전 화)	조 사 품 목 (품 목 수)	보 조 대 상 처	비 고

질 의 조 회 기 록 부

사무소

년 월 일

제 목	
질의 (지시) 내 용	
제 목	
응 신 내 용	